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연구

김 수 봉
김 진 수
김 상 철
정 찬 미

국 가 보 훈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국가보훈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연구」 연구과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머리말

국가보훈제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지도 50여년이 되었다. 암울했던 시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역사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초석을 놓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제도는 과거에 대한 보상 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반 국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가로 전국민을 위한 의료보장,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었고, 더 나아가 장기요양제도 등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보훈을 위한 급여급체계는 보훈대상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보훈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보훈욕구 증대로 등장한 다양한 신규 진입요구 계층과 지원확대 요구대상에게 합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있는 보훈보상체계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훈급여급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훈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고할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체 국민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양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당 연구원의 김수봉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원외 연구진으로 연세대학교 김진수교수, 서울시의회 김상철입법조사관이 참여하

였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귀중한 연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 과장과 이제복 사무관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준 당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김유경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21세기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체계로 자리를 잡아 보훈정책이 국가존속과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형평성과 적정성이 고려된 보훈체계의 구축으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영예로운 삶에 기여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하

목 차

요 약	10
제1장 서 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4
제2장 한국의 보훈급여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26
제1절 보훈급여금체계	26
제2절 보훈급여금 수준	32
제3절 보훈급여금체계의 문제점	36
제3장 외국의 보훈보상체계	47
제1절 미국	47
제2절 영국	58
제3절 독일	68
제4절 이스라엘	74
제5절 캐나다	79

제6절 정책적 시사점	84
제4장 보훈급여금체계 개편 방안	86
제1절 보훈급여금 개편의 기본방향	86
제2절 보상체계 개편	91
제3절 보상금수준 개선방안	104
제4절 수당제도 개선방안	118
제5절 일시금제도 도입	131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43
제1절 요약	143
제2절 정책건의	149
참고문헌	150

표 목 차

<표 2-1> 대상자별 보상금 수준	27
<표 2-2> 수당의 종류	30
<표 2-3> 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	31
<표 2-4> 애국지사의 등급별 보상금 수준	33
<표 2-5> 상이군경의 등급별 보훈급여금 수준	34
<표 2-6> 애지유족보상금	34
<표 2-7> 상이군경 유족보상금	35
<표 2-8> 소득계층 등급 분류기준표	36
<표 2-9> 상이보상금 수준	39
<표 2-10> 독립유공자의 유족급여	40
<표 2-11> 상이군경의 유족보상금 대체율	41
<표 2-12> 소득계층 등급 분류기준표	46
<표 2-13>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과 최저생계비	46
<표 3-1> 기본 상이보상금 표(Basic Compensation Rates)	49
<표 3-2> 특별 월 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Rate Table)	50
<표 3-3>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과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 비교	55
<표 3-4> 상이연금수급요건 가족합산 소득한도액(2008)	55
<표 3-5> 유족부모 보상금표(2008)	56
<표 3-6> 장해율에 따른 전쟁상이연금역	59
<표 3-7> 상이율 20% 이하에 대한 일시금(2008)	59
<표 3-8> 특별히 작은 상해에 대한 일시보상금(2008)	59

<표 3-9> 보조수당의 종류와 연지급액(2008)	63
<표 3-10> 영국의 일시금 보상금 수준	66
<표 3-11> GIP 요소	67
<표 3-12> 신체적 상이유형별 MdE 비율	70
<표 3-13> 독일 연방원호법에 따른 장해보상수준(2008)	71
<표 3-14> 독일연방원호법에 따른 유족보상수준(2008)	72
<표 3-15> 이스라엘의 일시보상금	75
<표 3-16> 이스라엘의 상이연금 지급액	76
<표 3-17> 이스라엘 중상이 노령자 특별수당액	79
<표 3-18> 상이연금 월급여액(2008)	80
<표 4-1> 국내 장해보상제도 비교	92
<표 4-2> 산재보험 등급별 보상일수	93
<표 4-3>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94
<표 4-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98
<표 4-5>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조건 및 수준	100
<표 4-6> 보훈 유족보상금 체계	101
<표 4-7>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104
<표 4-8> 주요국의 상이보상수준	107
<표 4-9>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지출 (2008 1/4)	108
<표 4-10> 장해발생연령별 급여수익비	109
<표 4-11> 국내 소비, 소득관련 통계(2007)	111
<표 4-12> 산재급여수준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113
<표 4-13> 공무원 평균보수월액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114
<표 4-14> 국민연금 A값 수준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115
<표 4-15> 1인 가구소득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117
<표 4-16> 장해율별 보상수준 비교	118

<표 4-17> 산재보험의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2008)	119
<표 4-18>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0
<표 4-19> 신보상체계에 따른 상이보상금	121
<표 4-20>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체계	123
<표 4-21> 장해율별 보상금 및 가족부양수당	124
<표 4-22> 수당 지급구분표	126
<표 4-23>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지수	127
<표 4-24> 국가보훈선	128
<표 4-25> 보상금 수급자 추이	132
<표 4-26> 보상금추계	133
<표 4-27> 일시금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년수별 지불계수	137
<표 4-28> 대안별 상이일시금 소요재정 추계	139
<표 4-29> 상이일시금제도의 장단점	140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국 평균가구원추이	43
<그림 2-2> 최근 3년이내 전역자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보상금 지급누계	44
<그림 4-1> 보훈급여금제도 개편 방향	88
<그림 4-2> 국가보훈선과 생활지원수당	129
<그림 4-3> 수당제도 개편(안)	130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사회적 수용이 어려운 보훈욕구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이념은 대상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보훈보상수준의 대폭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함.
-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기준도 대상집단별로 희생과 공헌의 개념 자체가 상이하므로 유용한 기준이 되지 못함.
- 보상 내용중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에 있음.
 - 신체손상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정하고
 - 보훈대상자로서 적정수준의 보상을 확보하며,
 - 시대적으로 적절한 수당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보훈제도와 유사한 국내의 장해보상제도 및 외국의 보훈보상제도를 비교·분석함.
 - 개혁된 국가를 중심으로 보상제도를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보상방법을 개발하여 보훈급여금체계에 개편과 연계시켜 보상모델을 제시함.
- 보훈처 내부 자료인 보훈대상자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

II. 한국의 보훈급여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1. 보훈급여금체계

- 보상금은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1급은 최대 367만 7천원, 국가유공자 상이자 1급은 최대 186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됨.
 - 보상금지급 준거지표는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설정
-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보훈대상자의 개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임.
-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령을 고려한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 사망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미성년 제매양육수당, 개별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이 있음.

-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부임.

2. 보훈급여금 수준

- 보상금수준은 대상과 등급에 따라서 전국가계조사 3인가구의 소비자 출액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득계층 등급을 설정하여 생계곤란층에 해당하는 경우 3인가구 이하일 경우 월9만원, 4인 이상가구 월10만원 지급함.

3. 보훈급여금체계의 문제점

- 기존의 제도가 과거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는 부합되었을 수 있으나, 변화된 시대 환경에는 타당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음.
 - 독자사망수당 등은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생활조정수당의 대상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 보훈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수급 대상의 변화로 기존의 제도와 보훈급여금체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합리성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고려를 하지 않음.

III. 외국의 보훈보상체계

1. 미국

- 군복무 또는 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제대군인 및 그 유족에게는 그 장해 또는 사망으로 초래된 소득능력 상실부분의 보전과 예우를 위한 금전적 보상(Cash Benefits)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함.
 - 군 공무나 훈련과 관련되어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을 그리고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족에게는 소득형편들을 고려하여 유족 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을 지급
 - 생계가 극히 곤란한 참전 제대군인 중에 군 공무·훈련과 무관한 장해(상이)가 있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을 그리고 생계 곤란한 유족에게는 사망연금(Death Pension)을 지급
 - 부양가족수당, 장해용 자동차 구입수당, 의복수당, 명예훈장 수당, 특수주택구입·개조에 필요한 교부금 등의 장해정도와 개별적 여건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2. 영국

- 전쟁연금제도에 따른 전쟁상이연금은 상이정도가 20% 이상인 경우 상이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이 지급됨. 장해율에 따라 정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상이정도 20% 이하일 경우 일시보상금 지급.
- 수당제도는 소득·취업불능·요양필요성·고령 등의 사유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제공.

- 국군보상계획에 따른 보상금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AFCS는 주로 복무로 인한 현저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면세되는 일시금을 지급.
 - GIP등급에 따라 보충소득을 지급함.

3. 독일

- 독일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의 보상은 재활치료, 전쟁신체불구자재활운동, 환자치료, 전쟁희생자부조, 상이자연금, 장기요양추가수당, 장제비, 사망수당, 유족연금과 유족사망 시의 장제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보상기준은 소득활동능력의 감소정도(Minderung der Erwerbsfähigkeit)임. MdE 30% 이상의 상이자는 MdE율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음.

4. 이스라엘

- 상이연금은 상이법에 의거, 복무관련해서 발생한 장해정도 20% 이상인 자(1996.1.1일 이전에는 10% 이상인 자)에게 지급.
- 전쟁 혹은 복무로 인한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및 1949년 상이법에서 인정된 상이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녀와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 상이자의 연령을 고려한 노령자 특별수당액 지급.

5. 캐나다

- 상이연금은 상이율 5%이상 상이등급은 20개로 구분됨. 상이원인의 직무 관련성에 기초한 5개 연금등급과 장해율을 종합평가하여 급여를 산

정함.

- 제대군인 신현장의 상이보상금은 복무와 관련하여 장해를 입은 상이제 대군인에 대해 제공되며, 금액은 장해정도에 따라 최고 \$260,844(2008년)로 일반적인 산재보험의 장해보상금에 비해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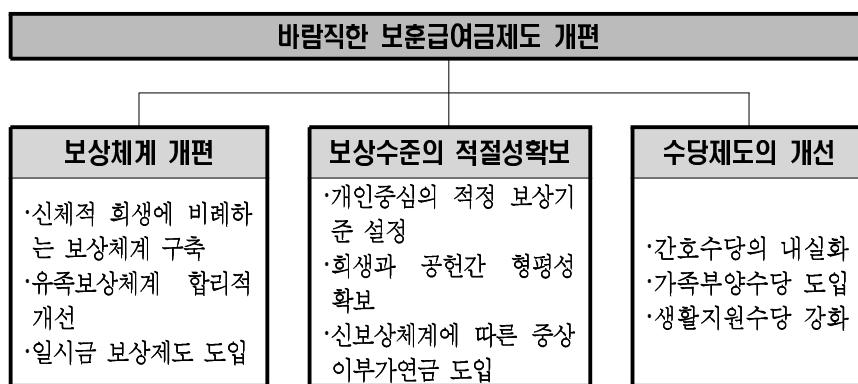
6.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의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특징들을 통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시.
 -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이보상수준은 장해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됨.
 - 상이보상에 있어 경상이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
 - 보훈급여체계의 두 축인 보상금과 수당제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
 -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함.

IV. 보훈급여금체계 개편 방안

1. 보훈급여금 개편의 기본방향

- 보훈급여금제도 개편 방향



-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행 보상금은 희생자체에 대한 보상과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체계 또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유족보상의 경우 일정 장해율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인중심의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함.
 - 가구형태 또는 규모 등도 점차 단순화 내지는 소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변화되는 가구성원수를 평균가구 또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상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수당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수당제도는 복잡한 제도를 하나의 형태로 단일화하고 급여수준은 장해 수준의 중증여부에 따른 추가보장과 가족상황을 감안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보상체계 개편

- 보훈보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체계는 신체적 기능에 국한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에 따른 소득감소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 등급은 경제활동 소득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손상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등급에 따라 차등화를 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의 중증에서 경증에 이르기 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해율에 비례하게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중상이자에게는 특별부가연

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유족연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훈유족 보상의 경우에도 본인 보상금의 60%정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3. 보상금수준 개선방안

- 현행 보상기준은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표'중 3인가구 전국가계평균소비지출월액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 2007.12. 기준 3인가구 소비지출은 1,872천원으로 2008년 현재 1급1항 보상금 1,864천원과 유사
- 장해율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등급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수당제도 또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면 기준선 설정은 소득보다는 소비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인 소비보다는 평균가구소비지출 수준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輕)상이자에게 일시금을 도입한다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지출보다는 소득이 기준이어야 한다.
 - 일반인의 경우 사고시점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고 급여수준이 얼마인가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향후의 소득패턴을 가정할 수 있지만,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적어 혼란이 예상됨.

4. 수당제도의 개선방안

- 보훈 관련 각종 수당은 15종류에 25개의 급여형태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

<현행제도>		<개편안>
예우법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 중상이부가연금에 일부 포함 - 간호수당은 요양서비스수가를 고려함 생활지원수당 (유족일시금 지급) 현행유지
개별법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참전명예수당	현행유지 현행유지 + 생활지원수당 현행유지
예우법시행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전상수당	65세 이상만/ 부양가족수당포함 65세이상만/ 부양가족수당포함 (유족일시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폐지

- 일회적 성격의 수당은 제도 개혁과 함께 폐지하며, 비슷한 성격의 수당은 단일화시킴.
- 고령수당, 전상수당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이나 무의탁 수당은 기본보상금의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상이에 대한 추가부가금에서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타 사회보장제도 특히 간호수당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서비스 체계의 환경이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5. 일시금제도 도입

- 일시금 제도 도입시 사고의 보상과 관련하여, 장래의 소득을 장해시점

을 기준으로 일시적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세가지 방식으로 일시금 재정을 추계함

- 호프만 또는 라이프니쓰 방식, 일정기간 수급방식, 절충방식 세가지 방식 사용.

□ 신규7급 상이자는 매년 7,500명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이 되면 8,5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추계를 위해 현행 상이7급 보상금인 월 275천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호프만방식과 라이프니쓰 방식은 매년 20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모든 7급상이자에게 5년분의 일시금을 지급한다면 1400억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47세까지는 조정계수(호프만계수 1/2적용)를 47세이후 연령은 5년분의 일시금을 받는다고 하면 1500억수준의 일시금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제2안이 재정친화적임을 알 수 있음.

□ 상이일시금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비고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금 활용 가능 ·긴급 생활자금 활용가능 -주택구입, 결혼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금 활용 후, 생계 대책 불확실성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금 수급자의 보상금외의 서비스(교육, 의료 등)지원 여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이 수급자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보상금재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으로는 일시금 재원확보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 	

□ 경상이자를 대상으로 일시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 직업재활의 경우에는 실제 현재의 보훈체제로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도입 단계에서는 외부에 위임하는 outsourcing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V.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약

-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 보상체계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함.
 - 보상수준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함
 -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함.
 - 보상수준은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수준이 되어야 함.
 - 정부재정의 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함
- 보상체계의 개편방안은 '희생과 공헌'의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함.
 - 보훈보상이 배상개념의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라 보상(reward)인 점이 명확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제적 보상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일시금형태의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보상금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미흡한 경우에 생계비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당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2. 정책건의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은 장해율에 근거한 보상체계 구축, 개인중심의 적정보장 기준선 설정 및 가족부양 수당제도의 도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기 3개 안은 폐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

된 것임.

-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통일된 장해율 판정도구가 요구됨
- 보상수준의 적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함.
 - 개인의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부모 부양, 은퇴, 노후 등에 따라 가족 상황이 바뀌고 지출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음.
- 개인중심의 보상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가족부양수당제도가 확립되어 야 함.
- 추가적으로 중상이자를 고려한 특별부가연금제도가 필요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보훈급여금은 국가 이익을 위해 기여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이와 같은 보훈급여금 체계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사회적 수용이 어려운 보훈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보훈급여금제도는 희생을 형평성있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보훈정책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보훈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이 같은 상황을 제 때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상수준과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다. 현행 법률의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이념은 대상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그 결과 보훈보상수준의 대폭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의 신체적 희생 유무나 희생정도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행 법률상 ‘희

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기준도 대상집단별로 희생과 공헌의 개념 자체가 상이하므로 유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각종 공적연금제도 등의 도입으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 보상수준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보훈급여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보다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연구가 수행된다. 우선, 보상체계의 합리화이다. 특히 상이보상체계의 경우 장해등급별로 보상수준이 결정된다. 비록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지만 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해율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손상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유족보상의 경우, 종전의 보상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체계는 기본급여 즉 생계급여 위주의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 따라서 보훈보상의 기준은 더 이상 최저생계가 아니라 보훈대상자로서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다. 현행 수당제도는 중상이자를 위한 간호수당과 가족들을 고려한 가족부양수당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대별된

다. 특히 중상이자에게 주어지는 간호수당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상이자들은 보상금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문적인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족부양성격의 수당은 보상수준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이전에 형성된 고령자를 위한 수당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생활조정수당은 실질적인 생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대부분 고령층 유족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고찰해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보훈제도와 유사한 국내의 장해보상제도와 외국의 보훈보상제도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최근의 보상방법이 개혁된 국가를 중심으로 보상제도를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보상방법을 개발하여 보훈급여금체계 개편과 연계시켜 보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합리적으로 마련된 보훈급여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훈처 내부 자료인 보훈대상자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찰해 본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로 현행 보훈급여금의 종류인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훈제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입·확대된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제2장은 보훈급여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현행 보훈보상금체계의 비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외국의 보훈보상체계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보훈보상체계와 최근 개혁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한국에 맞는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 보훈급여금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장해보상체계를 검토해보고 상이보상, 유족보상 개선 모델을 제시한다. 주 내용은 신체희생도를 고려한 합리적 보상제도 구축으로 장해등급(장해율)에 비례한 보상체계 구축, 중상이자를 위한 특별부가금(간호수당 부분포함)제도 도입 및 유족보상금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상이자와 유족들을 위한 일시금제도 도입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효과를 대안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또한 보상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맞는 준거기준을 설정한다.

제5장은 수당제도 개선방안으로 간호수당, 가족부양수당 및 생활조정수당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보훈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수당의 정비 등 수당 지급요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제6장은 요약 및 정책건의 부분이다.

제2장 한국의 보훈급여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보훈급여금체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보훈급여금이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는 두 禮遇法을 중심으로 보훈급여금체계를 고찰해보고, 보상금과 수당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보상금

보상금은 지급대상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국가유공자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이 해당되며, 국가유공자가 사망시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표 2-1>에서와 같이 보상금은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데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1급은 최대 367만 7천원, 국가유공자 상이자 1급은 최대 186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는 1만 8천원부터 17만 5천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보상금의 지급 준거지표가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가구의 평균적인 소비를 감안하기 위하여 3인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에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설정 하고 있다.

<표 2-1> 대상자별 보상금 수준

(단위: 천원)

대상별			보상금		증감
			2007	2008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	3,502	3,677
			4등급	1,865	1,958
			5등급	1,475	1,549
		건국포장	998	1,068	70
			대통령 표창	656	702
	애지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1,553	1,631
			1~3등급 유족	1,345	1,412
			4등급 배우자	1,143	1,200
			4등급 유족	1,118	1,174
			5등급 배우자	930	977
			5등급 유족	910	956
국가유공자	상이자	건국포장	배우자	618	661
			유족	613	656
		대통령	배우자	359	384
		표창	유족	352	377
	유족	상이자	1급 1항	1,757	1,864
			1급 2항	1,693	1,778
			1급 3항	1,623	1,704
			2급	1,440	1,512
			3급	1,346	1,413
			4급	1,129	1,185
			5급	935	982
			6급 1항	853	896
			6급 2항	789	827
			7급	257	275
재일학도의용군인			789	827	38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2. 수당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보훈대상자의 개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예우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 사망 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등이 있다. 한편 개별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참전명예수당 등도 있다.

우선 상기에 제시된 수당 중 '예우법'에 규정된 수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더불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보상금이다.

둘째,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중한 1급, 2급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며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 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다.

셋째,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무공훈장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생계비 차원이 아닌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급부이다. 단, 전·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수급한다.

넷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54. 10. 25 이전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자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 1. 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는 보훈제도의 미비 등으로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보전적 성격으로 주어지는 급여이다.

끝으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수당은 60세 이상인 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배우자, (조)부모 등에게 지급된다.

둘째, 무의탁수당은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상이 5~7급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고령수당 배제), 60세 이상 남자 또는 5세 이상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유족의 배우자(고령수당 배제), 60세(편모 55세)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유족의 (조)부모(고령수당 배제)에게 지급된다.

셋째, 무의탁부모부양수당은 유족의 배우자가 무의탁 요건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지급된다. 다만, 타 수당과의 병급은 배제된다.

넷째, 전상수당은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과 병급 될 수 있다.

다섯째, 미성년자녀양육수당과 미성년제매양육수당은 미성년 자녀나 제매를 2인 이상 양육시 타 수당과 병급하여 유족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게 초과인원 당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개별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별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수당은 월남전과 국내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가운데 고엽제후유의증을 갖는 환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된다. 단, 전·공상군경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택일하여 보상금이나 고엽제수당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 유공자중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게 생계비 차원이 아닌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급부이다. 단, 예우법에 의한 전·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으로서 동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택일하여 지급받는다.

<표 2-2> 수당의 종류

(단위: 천원)

종 류		2007	2008	증 감
생활조정수당	3인가족 이하	90	90	-
	4인가족 이상	100	100	-
간호수당	상이 1급 1항	1,809	1,863	54
	상이 1급 2항	1,743	1,795	52
	상이 1급 3항	1,676	1,726	50
	상이 2급	562	579	17
무 공 영 예 수 당		120	130	10
6·25자녀수당	제적 자녀	496	586	90
	승계 자녀	439	513	74
고령수당	상군, 유족	91	94	3
	배우자	145	147	2
무의탁수당	상이5~7급, 유족	258	266	8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배우자	145	147	2
독자사망수당	부모	258	266	8
2인 이상 사망수당	배우자, 부모	258	266	8
전상수당	전상군경	17	18	1
미성년자녀양육수당	2 인	175	180	5
미성년체대양육수당	2 인	350	360	10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 도	572	600	28
	중 등 도	423	444	21
	경 도	277	291	14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수당	고 도	1,018	1,071	53
	중 등 도	789	830	41
	경 도	633	669	36
참전명예수당		70	80	10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3. 사망일시금

매월 지급 하는 수당과는 달리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부이며,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본인, 보상금 지급이 종결되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유족, 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하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는 장례 주관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927~3,068천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표 2-3>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	3,06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00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504
	4. 건국포장 서훈자	1,008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927
독립유공자 의 유족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나. 배우자외의 유족	2,061 2,00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1,789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927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927
	5. 대통령표창을 받은자의 유족	927

<표 2-3>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계속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천원)
국가유공자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나.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다.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인 자	1,504 1,244 927
	2. 재일학도의용군인	927
	3. 연금지급대상인 유족	927

출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을 재구성.

제2절 보훈급여금 수준

1. 보상금 수준

가. 본인 보상금수준

1) 애국지사 보상금

독립유공자의 보상수준은 건국훈장 1-3등급은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월 3,67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등급은 1,958천원, 5등급은 1,549천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의 경우 각각 1,068천원, 702천원

으로 전국훈장 1-3등급대비 약 30%, 20%수준에 해당된다. <표 2-4>는 독립유공자의 보상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이보상의 경우에는 달리 등급별로 비례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애국지사의 등급별 보상금 수준

(단위: 천원, %)

구분	보훈급여금	전국훈장1-3등급 대비(%)
전국훈장	1-3등급	3,677
	4등급	1,958
	5등급	1,549
전국포장	1,068	29.0
대통령표창	702	19.1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2) 상이군경의 보상금

보훈급여금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보상수준이 적용된다. 현행 보상수준은 전국 가계 평균소비지출을 준거기준으로 정하고, 상이 1급 1항의 보상수준이 3인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한 금액과 상응하도록 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비수준을 준거로 삼는 것에 대하여 김용하(2006)는 종신지급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소득개념보다 소비수준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5>에 제시된 바처럼, 상이 1급 1항부터 7급까지 총 10개 등급의 2008년도 보상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등급 간의 보상금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상수준의 차이가 등간격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상이정도가 심할수록 부가적으로 연금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판정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표 2-5>상이군경의 등급별 보훈급여금 수준

(단위: 천원)

등급별	보상금	간호수당	합계	1급1항 대비
1급 1항	1,864	1,863	3,727	100.0%
1급 2항	1,778	1,795	3,573	95.4%
1급 3항	1,704	1,726	3,430	91.4%
2급	1,512	579	2,091	81.1%
3급	1,413		1,413	75.8%
4급	1,185		1,185	63.6%
5급	982		982	52.7%
6급1항	896		896	48.1%
6급2항	827		827	44.4%
7급	275		275	14.8%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나. 유족보상금 수준

1) 애지유족의 보상금

독립유공자 또는 상이군경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유사제도의 보상제도와는 달리 사망전 본인보상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우선 <표 2-6>은 애지유족의 보상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국훈장 1-3등급의 경우, 등급 구분없이 배우자와 기타 유족만을 구분하여 각각 163만원, 14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4, 5등급은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2-6> 애지유족보상금

(천원)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3등급	4등급	5등급		
배우자	1,631	1,200	977	661	384
유족	1,412	1,174	956	656	377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2) 상이유족의 보상금

상이군경의 유족보상금은 상이등급을 크게 1-5등급, 6-7등급으로 양분하고, 대상 유족은 '60세 이상 여부'와 '무의탁여부'를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장해인장해구분표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이어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 2-7> 상이군경 유족보상금

(단위: 천원)

	1-5급 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0세이상	일반	무의탁	60세이상	일반
배우자	1,126	1,007	860	571	455	308
부모	1,110	938	844	558	386	292
자녀		1,000			456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2.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득계층 등급을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생계곤란층으로 정하여 생계곤란층에 해당 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3인가구 이하일 경우 월 9만원, 4인 이상일 경우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보훈대상자중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만 해당되며, 고엽제후유(의)증 및 참전 유공자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총재산액(시가 평가액)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총재산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등급을 분류하며,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의 생활 등급이 4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의 생활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소득은 재산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농수산소득, 사업소득, 지원소득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며, 소득파악 방법은 소득에 따라 취업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부(公簿)확인,

이웃주민 의견청취, 본인면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등급의 기준은 <표 2-8>과 같이 구분된다. 생계곤란층의 수준은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보다는 약 60~70% 높은 금액이다.

<표 2-8> 소득계층 등급 분류기준표

구분	생활 안정층		생계 유지층	생계 곤란층
도시근로자 가계비 대비	200% 이상 (상 층)	20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기본생계비 이상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미만

제3절 보훈급여금체계의 문제점

보훈급여금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은 보훈급여금제도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한계로 판단되는 것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제도가 과거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는 부합되었을 수 있으나, 변화된 시대 환경에는 타당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해등급 판정 및 등급 간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수당체계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는 보훈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수급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제도와 부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변화에 의한 위험(risk of change)으로 최근 장해등급에 있어서 7급의 신설로 인하여 평시 상태에서 수급자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이를 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보장 측면에서 합리성의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그동안

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재활급여의 도입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재활급여의 필요성은 보훈제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1. 보상체계의 비합리성

가. 상이보상

1) 등급(장해율)별 보상수준의 형평성 부재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 이념은 대상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보훈보상수준이 대폭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보상기준적 측면에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별 희생과 공헌의 개념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외에도 신체희생도와 비례한 보상 등 상이등급간 보상금액이 일정한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 특히, 2000년 상이 7급의 신설 후, 등급 간의 보상금 편차가 더욱 비례계적이다. 7급의 경우, 현재 징병제에서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상이정도가 가벼운 상이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연유로 상당 부분이 6급에 비해 낮은 상이수준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등급별 보상수준의 체계상 현재 7급 보상금(275천원)은 바로 상위 등급인 6급 2항(827)과 비교할 때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치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 보상금 수준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매년 예산

편성 시 예산부처 및 수혜집단과 보상금 인상폭에 대한 견해 차이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상체계가 신체희생도에 비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매년 등급별 급여인상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2007년 이전에는 보상금급여체계가 생계급여인 기본급여와 보상급여로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60세 이상 및 무의탁 상이자 우대

상이군경의 보상금체계는 우선 상이등급과 '60세 이상' 여부에 따라 보상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5급 이하의 상이자는 '60세 이상 무의탁여부'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2-9>은 등급별 상이보상금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급부터 5급까지는 '60세 이상' 여부만 고려하고, 5급부터 7급까지는 추가적으로 '60세 이상 무의탁'여부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여부에 따라 월 94천원, '60세 이상 무의탁'여부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 172천원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8년부터 도입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자격은 65세부터이고, 노인층의 60%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의탁이 아닌 3-4급 중상이자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1, 2급의 경우 무의탁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3-4급은 간호수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탁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보상금의 차이는 5장에서 논의될 가족부양수당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9> 상이보상금 수준

(단위: 천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항	2항	3항					1항	2항	
60세이상 무의탁	-	-	-	-	-	-	1,248	1,162	1,093	541
60세이상	1,958	1,872	1,798	1,606	1,507	1,279	1,076	990	921	369
60세미만	1,864	1,778	1,704	1,512	1,413	1,185	982	896	827	275

나. 유족보상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본인 보상금의 경우와 달리, 등급을 구분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대체율 또한 등급별, 유족별로 상이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은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훈장을 수여받은 1-3급의 경우 본인급여의 40%내외인데 반하여, 전국훈장 4등급과 5등급, 전국포장의 경우에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의 경우에는 54%수준이다. 한편 전국훈 장 1-3급의 경우, 배우자와 기타 유족간의 보상금차이가 219천원으로 격 차 큰데 반하여, 그 외 유족보상금에서는 배우자와 기타 유족간의 급여수 준차이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10> 독립유공자의 유족급여

			대체율(%)	급여차이(천원) (=배우자 - 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44.4%	219
		유족	38.4%	
	4등급	배우자	61.3%	26
		유족	60.0%	
건국포장	5등급	배우자	63.1%	21
		유족	61.7%	
		배우자	61.9%	5
		유족	61.4%	
대통령표창		배우자	54.7%	7
		유족	53.7%	

주: 대체율은 사망전 본인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출함.

일반적으로 가계소비는 소득이 줄더라도 종전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비의 비가역성’을 언급하기 전에,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급여대체율 적용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의 유족보상은 사망전 지급하던 급여를 고려하여 유족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상이군인의 경우, 유족보상금의 대체율 격차가 더욱 차이가 난다. 특히 상이보상은 ‘60세이상 무의탁’, ‘60세이상 여부’ 등에 따라 보상수준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등급의 경우에는 본인 보상금보다 더욱 많은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표 2-11>는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저등급과 자녀에게 주는 유족보상금의 대체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상이군경의 유족보상금 대체율

(단위: %)

	1급 - 5급			6 - 7급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
1급1항~5급	1급1항~5급	1급1항~5급	6급1항~7급	6급1항~7급	6급1항~7급	6급1항~7급
60세 이상	51.4 ~ 93.6	47.9 ~ 87.2	51.1~101.8	46.0~123.3	39.0 ~ 104.6	46.1 ~ 165.8
일반	43.9 ~ 87.6	45.3 ~ 85.9		34.4 ~ 112.0	32.6 ~ 106.2	

주: 유족보상금 대체율은 본인보상금 대비임.

2. 보상수준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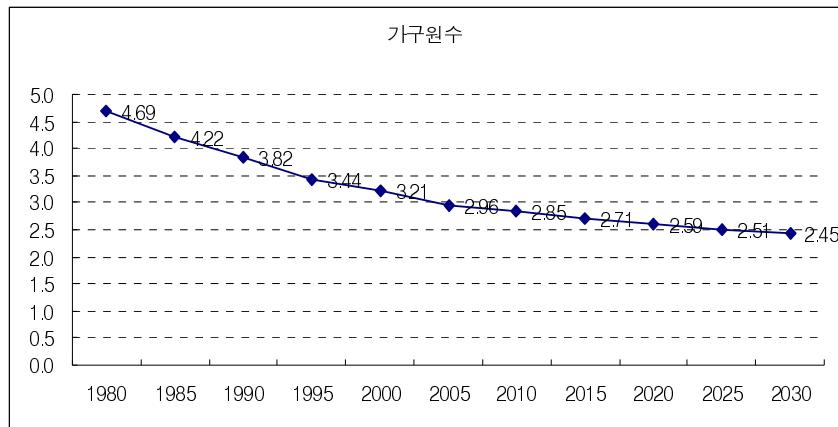
현행 보상금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3인 가구 소비지출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한 금액이 상이군경 1급1항의 본인 보상금 준거기준으로 산출된다. 산출과정을 보면 2007년 3인가구 소비가계지출 약 2,199천 원으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각각 118천원, 209천원을 감하면, 준거기준은 약 1,872천원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2008년 1급1항의 보상금수준은 1,864 천원으로 결정된다.

우선 보상기준을 소득으로 할 것인가? 소비지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장해로 인한 손실의 배상은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훈보상은 더 적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김용하(2006)는 이에 대해 보상금은 종신지급을 위한 기준이므로 소비수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고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상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상금수준이 장

해등급별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지출이 아닌 소득능력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중 사고를 당한 사병들의 충분한 보상을 하는 데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요인들이 최근 보상에 대한 형평성 부재에 대한 논의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기준은 소비지출은 10개의 중분류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지원비를 제외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8개품목의 소비지출을 보상금급여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상이 1급1항의 보상금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소득조사의 중분류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의 중분류항목에는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에 지출된 비용이 있고, 교육비에는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 등으로 세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와 교육비를 일괄 제외하면 소비지출은 과소계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평균가구원수추이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인기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일 수 없어 언젠가는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림 2-1> 전국 평균가원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가구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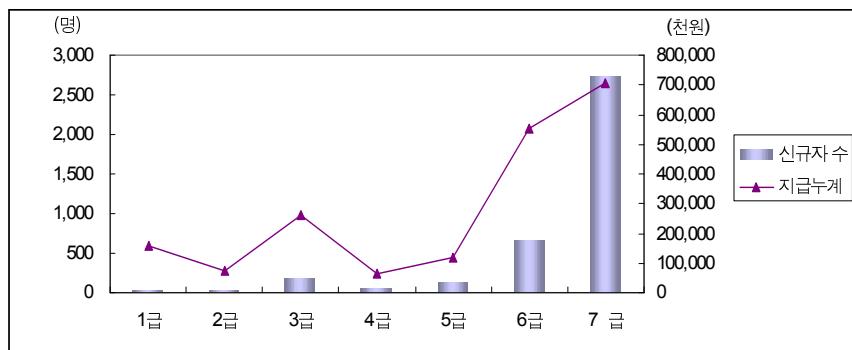
3. 보상금 지급방법의 획일화

일반근로자가 근무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제도에서 보장을 받는데, 산재보험은 장해등급 14등급 중 1~3등급은 연금으로, 4~7등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등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3등급의 중상이자는 연금만으로 수급하도록 하여 산재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8등급 이하의 경상이자는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훈급여는 총 10등급 모두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상이자까지 평생 연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최하위등급인 7등급의 젊은 경상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여지급방법의 수정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신규 보훈대상자는 <그림 2-2>과 같이 상이 7급이 대부분이며, 이 등급은 20대의 젊은 청년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 경미한 상이로 인해 근로능력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시까지 적은 금액의 연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시금의 형태로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2> 최근 3년 이내 전역자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보상금 지급누계



4. 비합리적인 수당제도

가. 간호수당의 문제점

수당체계가 지나치게 복잡·다양하고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사망수당 등은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당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수당에 대한 합리적 선정 준거 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당의 다양함에 따라 유사대상자의 보상요구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기초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보훈보상체계는 철저한 공훈도와 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의 실시

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고 희생과 관련이 없는 수당들은 통폐합하며, 경제여건과 관련된 수당들은 종목을 간소화 하고 지급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수당은 본질적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예산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급의 경우 180만 원 정도의 간호수당이 주어지나 2급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간호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간호인을 부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간호인을 보훈대상자 개인이 직접 고용하기 어려워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현금급여 대신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1·2급 모두 직접 간호인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호인 소개를 담당하는 중개자를 통해 소개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지급된 간호비가 온전히 간호를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상이 2급 이상의 경우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급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을 대상 장해의 종류 및 범위를 특정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조정수당의 문제점

생활조정수당의 대상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일 경우는 보상금 자체가 생활등급이 상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대상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수행자 등 역시 소득 조사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 결정방법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득계

층 등급을 생활 안정층, 생계 유지층, 생계 곤란층으로 정하고, 생계 곤란층에 해당 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3인가구 이하일 경우 월 9만원, 4인 이상일 경우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2-12> 소득계층 등급 분류기준표

구분	생활 안정층		생계 유지층	생계 곤란층
도시근로자 가계비 대비	200% 이상 (상 층)	20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기본생계비 이상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미만

그러나 최근 생활조정수당의 기준소득이 일부구간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에 제시된 바처럼 생계곤란층(10등급 이하)의 기준선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71.3%임에 반하여, 5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는 99.4%, 6인 가구에서는 최저 생계비의 9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과 최저생계비

구 분	생계곤란층 기준선(A)	'08년 최저생계비(B)	A/B(%)
1인 가구	793천원	463,047	171.3
2인 가구	928천원	784,319	118.3
3인 가구	1,143천원	1,026,603	111.3
4인 가구	1,344천원	1,265,848	106.2
5인 가구	1,479천원	1,487,878	99.4
6인 가구	1,546천원	1,712,186	90.3

제3장 외국의 보훈보상체계

이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보훈급여금체계와 보상수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보훈보상체계는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등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비교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보훈급여금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보상방법과 보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미국

군복무 또는 훈련 중 상이(상해·사망)를 입거나 사망한 제대군인 및 그 유족에게는 그 장해 또는 사망으로 초래된 소득능력 상실부분의 보전과 예우를 위한 금전적 보상(Cash Benefits)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보상(Compensation)으로 군복무나 훈련과 관련되어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을 그리고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족에게는 소득형편들을 고려하여 유족 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연금과 유사하다.

둘째는 연금(Pension)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참전 제대군인 중에 군복무·훈련과 무관한 장해(상이)가 있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을 그리고 생계 곤란한 유족에게는 사망연금(Death Pension)을 지급한다. 이 연금은 우리나라의 생활조

정수당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부조적 차원의 지원이다.

셋째는 각종수당 및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제대군인 장해정도와 개별적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부양가족수당, 장해용 자동차 구입수당, 의 복수당, 명예훈장 수당, 특수 주택구입·개조에 필요한 교부금 등이 해당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수당 제도와 성격이 비슷하다. 퇴역군인연금, 군 퇴직수당 등 군복무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수령 받고 있는 연금이나 수당 등은 국가 이중보상 배제원칙에 따라 상이보상금 중 해당액을 상계·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며 제대군인 본인이 군인연금 등이나 상이보상금 중에 택일할 수 있다.

1. 보상금

가.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상이보상금은 군복무관련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본인의 고의과실 및 위법행위, 술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초래된 장해는 제외)중 현재 그 장해로 생활이 불편하고 고통 중에 있는 상이 제대군인에게 지급된다.

상이보상금은 장해등급 정도와 부양가족 수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체의 일부 및 기능상실 등 중상이 제대군인에게는 특별가산금이 지급된다. 상이보상금은 연방 또 주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기본보상금(Basic Compensation Rate)

기본적인 상이보상금은 군복무기간, 계급, 현 직업유무, 소득정도 등에 구애됨 없이 장해내용과 장해율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상이제대군인의 상이등급의 정도와 부양가족 수, 그리고 실업상태 등 제대군인 개인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상이제대군인에게는 최저 \$123(10% 장해)에서 최고 \$2,673(100% 장해)지급된다.

<표 3-1> 기본 상이보상금 표(Basic Compensation Rates)

구분	장해등급	(단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상이군인 본인	123	243	376	541	770	974	1,228	1,427	1,604	2,673	
상이군인+배우자	123	243	421	601	845	1,064	1,333	1,547	1,739	2,823	
상이군인+배우자 +부모 1인	123	243	457	649	905	1,136	1,417	1,643	1,847	2,943	
상이군인+배우자+부모 2인	123	243	493	697	965	1,208	1,501	1,739	1,955	3,063	
상이군인+부모 1인	123	243	412	589	830	1,046	1,312	1,523	1,712	2,793	
상이군인+부모 2인	123	243	448	637	890	1,118	1,396	1,619	1,820	2,913	
상이군인 +18세 미만자녀 1인	123	243	406	581	820	1,034	1,298	1,507	1,694	2,774	
상이군인+배우자+자녀1인	123	243	453	644	899	1,129	1,409	1,634	1,837	2,932	
상이군인+배우자+부모1인 +자녀1인	123	243	489	692	959	1,201	1,493	1,730	1,945	3,052	
상이군인+배우자+부모2인 +자녀1인	123	243	525	740	1,019	1,273	1,577	1,826	2,053	3,172	
상이군인+부모1인+자녀1인	123	243	442	629	880	1,106	1,382	1,603	1,802	2,894	
상이군인+부모2인+자녀1인	123	243	478	677	940	1,178	1,466	1,699	1,910	3,014	
18세 미만 자녀당 추가	-	-	22	30	37	45	52	60	67	75	
18세 초과 취학자녀당 추 가	-	-	72	96	120	144	168	192	216	240	
간병요구 중증장해배우자 추가	40	40	40	54	68	81	95	108	122	136	

자료: www.military.com/benefits/military-pay/veterans-pensions

2) 특별 월 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해부학적으로 손, 발, 눈, 귀, 그리고 일부장기를 상실하거나 그 사용기
능을 상실한 상이 제대군인에게 기본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

는데 특별 월 보상금표상에는 기본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에 제시된 바처럼 특별 장해율별 가족부양이 있는 자를 고려하여 지급된다.

가) K 장해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질병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기를 해부학적으로 상실하거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발 하나, 또는 손 하나, 또는 양 둔부(엉덩이), 또는 미약한 시각만 가질 정도로 한 눈이 멀었거나, 또는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적인 발성불능이거나, 또는 공기 또는 뼈를 통한 전달기능을 상실하여 양쪽 귀가 멀었거나, 또는 여성 제대군인의 경우 한 쪽 또는 양측의 유방을 해부학적으로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표 3-2> 특별 월 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Rate Table)
(단위: \$)

장해구분별 구 분	L	$L\frac{1}{2}$	M	$M\frac{1}{2}$	N	$N\frac{1}{2}$	O/P	R.1	R.2	S
상이군인 본인	3,327	3,499	3,671	3,923	4,176	4,421	4,667	6,669	7,650	2,993
상이군인+배우자	3,477	3,649	3,821	4,073	4,326	4,571	4,817	6,819	7,800	3,143
상이군인+배우자+ 부모 1인	3,597	3,769	3,941	4,193	4,446	4,691	4,937	6,939	7,920	3,263
상이군인+배우자+ 부모 2인	3,717	3,889	4,061	4,313	4,566	4,811	5,057	7,059	8,040	3,383
상이군인+부모 1인	3,447	3,619	3,791	4,043	4,296	4,541	4,787	6,789	7,770	3,113
상이군인+부모 2인	3,567	3,739	3,911	4,163	4,416	4,661	4,907	6,909	7,890	3,233
상이군인 + 18세 미만자녀 1 인	3,428	3,600	3,772	4,024	4,277	4,522	4,768	6,770	7,751	3,094
상이군인+배우자+ 자녀 1인	3,586	3,758	3,930	4,182	4,435	4,680	4,926	6,928	7,909	3,252
상이군인+부모1인 +자녀 1인	3,548	3,720	3,892	4,144	4,397	4,642	4,888	6,890	7,871	3,214
상이군인+부모2인 +자녀 1인	3,668	3,840	4,012	4,264	4,517	4,762	5,008	7,010	7,991	3,334

<표 3-2> 특별 월 상이보상금-계속

(단위: \$)

구 분	장해구분별	L	$L\frac{1}{2}$	M	$M\frac{1}{2}$	N	$N\frac{1}{2}$	O/P	R.1	R.2	S
상군+배우자+부모1인 +자녀1인	상군+배우자+부모1인 +자녀1인	3,706	3,878	4,050	4,302	4,555	4,800	5,046	7,048	8,029	3,372
상군+배우자+부모2인 +자녀1인	상군+배우자+부모2인 +자녀1인	3,826	3,998	4,170	4,422	4,675	4,920	5,166	7,168	8,149	3,492
18세 미만 자녀당 추가	18세 미만 자녀당 추가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18세 초과 취학자 녀당 추가	18세 초과 취학자 녀당 추가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간병요구 증증 장 해 배우자	간병요구 증증 장 해 배우자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자료: www.military.com/benefits/military-pay/veterans-pensions

나) L 장해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해로 인해 해부학적으로 양 발의 상실 또는 양 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한 손과 한 발의 상실 또는 한 손과 한 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5/200의 시각인지도 이하에 해당하는 정도로 양쪽 눈이 멀었거나, 또는 영구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거나 규칙적인 도움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M 장해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해로 인하여 양손의 해부학적인 손실 또는 기능의 상실을 입었거나, 또는 양 다리의 해부학적인 손실 또는 기능의 상실을 입어 보철구를 착용하고도 자연스러운 팔굽 또는 무릎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단지 빛만 인지할 정도로 양 눈의 시각을 잃은 경우 등으로 제대군인에게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정도일 경우에 해당한다.

라) N 장해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해로 인해 양 팔을 해부학적으로 상실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하여 보철구를 착용하고도 자연스러운 팔굽운동이 불가능한 정도인 경우, 또는 양 다리를 엉덩이 있는 곳까지 해부학적으로 상실하여 보철구 착용이 불가능한 정도인 경우, 또는 해부학적으로 한 팔을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깨 가까이에서 상실하고 한 다리를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덩이 가까이에서 상실한 경우, 또는 해부학적으로 양 눈을 상실한 경우 또는 양 눈의 시각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 O 장해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해로 인해 이 절의 'L~N'의 둘 이상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조건의 장해를 입었고 장해율 결정에 어떤 조건도 중복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또는 제대군인이 양쪽 청력에 60%이상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손상(이중 적어도 한쪽 청각 손상이 복무관련이어야 한다)을 입음과 동시에 복무와 관련하여 시각을 상실하여 시각인지력이 5/200 이하인 경우, 또는 제대군인이 한 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40%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는 양쪽 청력에 손상을 입었고 동시에 복무관련으로 시력을 잃어 기껏해야 빛만을 인지할 수 있을 뿐인 경우, 또는 제대군인이 양 팔을 해부학적으로 어깨 가까이에서 상실하여 보철구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바) P 장해율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해가 위에서 서술한 장해율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보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 상위 장해율이나 중간 장해율로 결정할 수 있다. 제대군인이 복무와 관련하여 5/200 이하의 시

각만 남길 정도로 시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① 양쪽 청력을 30%이상의 장해율로 상실(양 청력 손상중 적어도 하나는 복무관련이어야 함)하였을 경우,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 상위 장해율로 결정할 수 있다. 또는 ② 제대 군인이 한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한 손 또는 한 발의 해부학적 인 상실 또는 기능의 상실을 입었다면,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 상위 장해 율로 결정할 수 있다. 제대군인이 팔다리 셋의 해부학적 상실 또는 기능 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또는 해부학적인 상실과 기능의 상실을 복합적으로 가진 경우,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상위장해율 또는 중간 장해율을 결정할 수 있다. 장해율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두 장해율의 산술평균으로 설정 되며, 가장 근사치인 달러까지 반올림한다.

사) Q 장해율

법률(Public Law 90-493), 4(a)규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장해구분은 비활동성 결핵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한 보상이지만 더 이상 특별 월 상이 보상 장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R 장해율

제대군인이 P 장해율 규정에 따라 최고 장해율이 정해지는 'O' 장해율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이거나, 또는 'N~O' 장해율 사이의 중간 장해율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가지고 'K' 장해율을 가진 경우로서 규칙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금에 덧붙여서

- 'R.1' 제대군인은 간병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 'R.2' 만일 제대군인이 그러한 규칙적인 개호에 더하여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면, 즉, 제대군인부 장관이 그러한 간호가 없을 경우 그 제대군인이 입원이나 요양원, 또는 다른 주거시설에서의 간호를 필요로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러한 제대군인은 'R.1'에서 규정한 수당 대신

에 간호수당을 받는다.

'높은 수준의 보살핌 필요'란 매일 제대군인의 가정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자격을 가진 건강 가료 전문가로부터의 규칙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한 개인적 건강가료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가료의 필요성이 있는가는 제대군인부가 채용한 외과 의사가 결정하며, 만일 그러한 외과의사를 활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그러한 외과의사의 점검에 기초하여 계약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여 그러한 기능을 행하는 외과의사가 결정한다. 이 수당은 장해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부가적인 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S 장해율

만일 제대군인이 전폐로 평가되는 복무관련 장해를 입었다면, 그리고 (1) 이에 더하여 60% 이상으로 매길 수 있는 별도의 복무관련 장해를 입었다면, 또는 (2) 그러한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해 또는 장해들 때문에 '영구히 가택을 벗어날 수 없다면" S 장해율에 해당한다. "영구히 가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은 제대군인이 그러한 제대군인의 가택(만일 시설에 수용되었다면, 병동 또는 치료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거가 한정되었거나, 그러한 복무관련 장해가 그 제대군인의 일생동안 계속 남을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명확하여 그러한 조치가 예견되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

나.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

생계곤란 저소득자로 최소한 하루 이상은 참전기간(멕시코 국경전쟁, 세계 제 1차 및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페르시안 전쟁 기간 해당자)을 포함하여 총 90일 이상(1980.09.07 이후 입대자는 최소한 24개월 이상)을 현역으로 군복무한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해가 있거나 65

세 이상인 참전 제대군인에게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이 매월 지급된다. 상이연금은 구성가족별 연간소득 한도액에서 실제 합산가족소득의 차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표 3-3>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과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비교

구분	성격	대상	장해 인과성	장해정도	복무기간	생활소득정도
상이보상금	공현과 희생의 국가보상적 차원	일반 제대군인	군복무 관련 (주로 군복무 중 발생 장해)	장해율 10% 이상	제한 무 (1일 이상)	무관
상이연금	공현과 희생의 사회복지적 차원	참전기 간제대군인	비군복무관련(주로 제대 후 발생 장해) ※장해가없는 65세이상 참전자도 수급자격	중증장해 (취업 불가자)	참전기간이 1일 이상 현역으로 총 90일 이상 복무(1980년이후는 24개월 이상)	생계 곤란

상이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수입을 합한 가족 총 수입이 법에 의해 정하여진 연간 소득한도액 보다 낮아야 한다.

<표 3-4> 상이연금수급요건 가족합산 소득한도액(2008)

구성 가족	연간소득한도액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	\$11,830
제대군인+배우자+미성년 자녀 1명	\$15,493
장해로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	\$14,457
장해로 집에서 꼼짝 못하는 제대군인 + 부양가족 1명	\$18,120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제대군인 본인	\$19,736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제대군인+ 부양가족 1명	\$23,396

다. 유족 보상금(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1) 유족부모 보상금(Parents' 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¹⁾

이 급여는 수급권자의 생활소득 정도를 고려하여 군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의 부모나 제대군인의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이다. 지급액은 구성가족별 연간최고 지급액에서 구성가족별 합산소득의 차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표 3-5> 유족부모 보상금 표(2008)

구 성 가 족	연간최고 지급액
혼자인 유족 부 혹은 모로서 배우자와 동거 또는 비동거인 경우	\$6,828
유족인 부 혹은 모로서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4,994
유족인 부 혹은 모로서 현 배우자나 사망한 제대군인의 부나 모와 동거하는 경우	\$4,644

유족부모 보상금은 제대군인의 사망으로 당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초과 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부모 보상금 수급권자나 수급신청자는 매년 본인 및 배우자(동거 시)의 소득수입원(총임금, 은퇴연금, 보험보상금 · 수의금 · 연금, 이자, 배당금 등)을 제대군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유족배우자 · 자녀 보상금(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족인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매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배우자 · 자녀) 보상금은 2008년 기준 매월 \$1,154 지급한다. 매월 보상금은 부양 미성년 자녀 1인당 \$286로 자녀수에 따라 증가된다.

1) 38 U. S. C. Section 1315.

또한 유족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양로원에 있는 경우 \$271, 항상 집에서 타인의 도움이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 \$135가 추가 지급한다.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족배우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미성년 자녀수에 관계없이 과도기 적응 수당을 매월 \$250 추가 지급하되 2년 전이라도 자녀가 18세 도달하거나 18세 미만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라. 주요 수당제도

군 공무·훈련 중에 발생·악화된 장해(부상·질병)로 전역한 제대군인 중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장해 제대군인에게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

1) 간병수당

장해율 30% 이상인 제대군인 본인이 정기적인 타인의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으로 가택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이보상금과 상이연금 외에 부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장해율 30% 이상인 제대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수당

군복무관련 상이처(장해)의 장해율이 30% 이상인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장해율과 제대군인의 개별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부양가족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중인 23세 미만 자녀, 그리고 저소득 및 재산이 없는 부모이다(표 3-1, 3-2 참조).

3) 자동차 혹은 운반수단 구입 수당²⁾

한쪽 손이나 팔, 영구적으로 양쪽 눈의 시력장애자를 위한 장해인용 자

동차 구입 시 일생 1회에 한해 \$11,000까지 자동차 구입 수당을 지급한다.

4) 의복 수당³⁾

군복무관련 장해 중 보철구 혹은 정형외과적인 장치 착용으로 장치들이 의복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 2008년 기준 연간 \$716 의복수당을 지급 한다.

제2절 영국

1. 전쟁연금제도(WPS, War Pensions Scheme)(구 보상제도)

가. 보상금

(1) 상이보상

영국의 전쟁상이연금은 산재보상과 마찬가지로 장해율에 따라 정해지는 데,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20% 이상인 경우 상이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이 지급된다. 20% 이하는 장해의 종류와 정도(일시/한시/영구장해)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된다.

영국의 전쟁상이연금액은 장해율에 따라 정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보상수준이 장해율에 따라 등간격이다.

2) 38 U. S. C. Section 1161.

3) 38 U. S .C. Section 1162.

<표 3-6> 장해율에 따른 전쟁상이연금액(2008)

등급 구분	(단위: £/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장교	7571	6814	6057	5300	4543	3786	3028	2271	1514
기타 직위	7545.20	6790.68	6036.16	5281.64	4527.12	3772.60	3018.08	2263.56	1509.04

자료: Rates of War Pensions and allowances 2008-2009

한편 상이율 20%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상이 후 판정기간에 따라 일시금을 수준을 달리한다.

<표 3-7> 상이율 20% 이하에 대한 일시금(2008)

장해율	(단위: £)		
	1년 미만	1년 이상	부정기
1-5%	381	770	2308
6-14%	856	1707	5130
15-19%	1499	2989	8974

자료: Rates of War Pensions and allowances 2008-2009

또한 손가락, 발가락 등의 경미한 손상은 <표 3-8>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3-8> 특별히 작은 상해에 대한 일시보상금(2008)

구분	상실된 범위	금액
손 가 락	전체 손가락 및 2개 이상의 손가락뼈를 상실했을 경우	£6902
	1개 이상 2개 미만의 손가락뼈를 상실했을 경우	£5523
	1개의 손가락뼈나 한 부분을 상실했을 경우	£4601
	뼈의 손실 업이 절단한 경우	£2754

가운데손가락 (Middle finger)	전체 손가락 및 2개 이상의 손가락뼈를 상실했을 경우	£5978
	1개 이상 2개 미만의 손가락뼈를 상실했을 경우	£4601
	1개의 손가락뼈나 한 부분을 상실했을 경우	£3678
	뼈의 손실 업이 절단한 경우	£2300
약손가락 또는 새끼손가락 (Ring or little finger)	전체 손가락 및 2개 이상의 손가락뼈를 상실했을 경우	£3678
	1개 이상 2개 미만의 손가락뼈를 상실했을 경우	£3224
	1개의 손가락뼈나 한 부분을 상실했을 경우	£2754
	뼈의 손실 업이 절단한 경우	£1378
엄지발가락 (Great toe)	관절과 함께 상실했을 경우	£6902
	한 개의 다른 발가락(One other toe)	£1833
	관절과 함께 상실했을 경우	£1833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세 개의 발가락 (Three toes, excluding great toe)	£924
발 가 락	관절과 함께 상실했을 경우	£2754
	제외한 두 개의 발가락 (Two toes, excluding great toe)	약간의 뼈와 발의 한 부분을 상실했을 경우 £1378
	관절과 함께 상실했을 경우	£3224
	제외한 세 개의 발가락 (Three toes, excluding great toe)	약간의 뼈와 발의 한 부분을 상실했을 경우 £1833
발 가 락	관절과 함께 상실했을 경우	£4601
	제외한 네 개의 발가락 (Four toes, excluding great toe)	약간의 뼈와 발의 한 부분을 상실했을 경우 £1833

자료: Rates of War Pensions and allowances 2008-2009

2) 유족보상

영국의 유족연금은 사망 후 26주부터 지급되는데 전사자의 배우자, 사망당시 전쟁연금과 상시개호수당 수급자, 사망당시 전쟁연금의 80% 이상과 실업보조 수당을 받던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계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은 대상자가 사망 전에 상시간호수당이나 실업보조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결정되기 전 26주간 임시수당이 지급된다.

나. 수당제도

영국의 전쟁연금제도에는 수당제도는 소득 취업불능 · 요양필요성 · 고령 등의 사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당제도가 있다.

1) 실업보조 수당

실업보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 연금 수급권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전쟁연금의 60% 이상을 지급 받고 있어야 하고, 65세 이하여야 한다.

실업보조수당에 위안 수당이 낮은 비율로 부가되며, 기본퇴직연금과 실업보조수당은 동시에 지급될 수 없다. 65세에 이르면 실업보조수당을 수령하는 전쟁연금수급권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업보조수당을 계속해서 수령할 것인지 결정해야 만 한다.

2) 저소득직업에 대한 수당

에게 주어진다. 상이연금 제도는 전쟁연금 수령자가 장애율이 40% 이상이고 65세 미만인 취업자로서 유사한 재정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며, 그 수당과 기본적 전쟁 연

금은 합산하여 전쟁연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저소득직업에 대한 수당은 실업보조 수당, 치료수당 또는 전쟁연금이 100%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상시 간호수당

상시간호수당 수급자격은 장해율이 80% 이상인 자로, 개호정도에 따라 상시간호수당은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개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당은 지급될 수 있다. 상시간호수당은 가정의 도움이 아니라 개인적 도움을 위해서만 지급된다. 따라서 전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요양원에서 4주 이상 보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상시간호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비율의 위안 수당 수혜자격이 있다. 그러나 상시간호수당은 간호수당 및 장해생활수당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4) 노령수당

65세 이상으로서 전쟁연금 40% 이상 수령자에게는 장해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5) 피복수당

상이처가 20% 이상으로 판정되고 의복에 손상이 간 경우에 매년 4월에 지급된다.

6) 위안수당

실업보조수당과 상시간호수당과 함께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7) 장해수당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전쟁연금 수급권자가 아직 60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다.

8) 특별증증장해수당

상시간호수당이 고도의 장해 등급에 해당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표 3-9> 보조수당의 종류와 연지급액(2008)

수당 종류	구분	장교	기타 직위
* 실업 보조수당(Unemployment allowance)	본인	£4681	£4664.4
- 장해율 60%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배우자	£2638	£2628.6
	첫째 자녀	£613	£611
	둘째 자녀부터	£720	£717.6
* 저소득 직업에 대한 수당(Allowance for Lowered Standard of Occupation)		£ 2855	£ 2845.4
- 장해율 40%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반일율(Half day rate)	£ 1430	£ 1424.8
*상시간호수당(Constant Allowance)	전일율(Full day rate)	£ 2859	£ 2849.6
	중간율(Intermediate rate)	£ 4289	£ 4274.4
	예외율(Exceptional rate)	£ 5719	£ 5699.2
* 고령수당(Age Allowance)	장해율 40 or 50%	£509	£507.0
	장해율 60 or 70%	£777	£774.8
	장해율 80 or 90%	£1109	£1105.0
	장해율 100%	£1555	£1549.6
* 피복수당(Clothing Allowance) 상한액		£187.00	
- 상이처가 20%이상, 의복에 손상경우			
* 위안수당(Comforts Allowance)	고율	£1226	£1222.0
	저율	£613	£611.0
* 장해수당(Invalidity Allowance) 상한액	40세이전	£926	£923.0
	40-50세미만자	£595	£592.8

	50-60세 미만	£297	£296.4
* 특별중증장해수당(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2859	£2,849.6
- 상시간호수당 고도 수급 및 직업이 없는 경우 자동지급			
* 중증장해 직업 수당(Severe Disablement Occupational Allowance)		£1430	£1,424.8
- 상시간호수당 고도 수급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자동지급			
* 신체 장해자 이동보조금(Mobility Supplement)		£2726	£2717

자료: Rates of War Pensions and allowances 2008-2009

9) 중증장해 직업수당

상시 간호수당이 고도의 등급에 해당되어 지급되고, 수급권자가 고용상 태인 경우에 특별중증장해수당 이외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10) 이동보조 수당

이동보조 수당은 수급권자의 상처로 인하여 보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보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쟁 연금을 40% 이상 수혜 받고 있으며,
- 그리고 장해로 인한 심각한 보행에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 시각장애의 정도가 90% 이상으로 평가받았거나, 청각장애가 80% 이상 평가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2. 국군보상계획(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AFCS)(신 보상 지원제도)

가. 보상금

영국에서는 2005년 4월부터 국군보상계획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AFCS)이 도입되었으며, 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제도는 제대군인청에 의해서 주관되며 기존의 전쟁연금제도(WPS, War Pensions Scheme)를 완전히 그리고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는 기존의 AFPS(국군연금계획) 가운데 관련이 되는 혜택(attributable benefits)을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WPS는 2005년 4월 6일 이전에 발생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경우에 계속하여 적용된다.

보상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작전 배치 중에 팔을 상실하거나 사고에 관련된 군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척추 부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상금은 비번 근무 중에도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자가 군인이란 이유로 테러 공격의 공격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된 경우이다. AFCS는 모험훈련, 체력교육과 활동, 스포츠를 포함한 복무와 관련한 체력증진활동에 야기된 부상을 포함한다. AFCS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귀가 중 발생한 복무 여행에 대해서 보상한다. AFCS는 복무로 인하여 악화된 부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상이보상(일시금)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AFCS는 주로 복무로 인한 현저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면세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일시금은 15단계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1단계는 시력과 청력 손실, 전신 마비로 이어지는 척추 손상 같은 가장 극심한 상태를 포괄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15단계는 가벼운 화상과 무릎 탈골 같은 경미한 부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표 3-10> 영국의 일시금 보상금 수준
(2008년 현재)

등급	금액	등급	금액
1	£285,000	9	£22,000
2	£201,250	10	£16,500
3	£115,000	11	£11,000
4	£86,250	12	£8,250
5	£57,500	13	£5,250
6	£46,000	14	£2,625
7	£34,500	15	£1,050
8	£28,750		

자료: <http://www.veterans-uk.info/pdfs/afcs/tariff.pdf>

2) 소득보장지급

1단계부터 11단계에 해당되는 심각한 질환과 부상에 대해서 보증된 소득(Guaranteed Income Payment: 이하 GIP)이 지급되는 데, 그 금액은 보수월액과 연령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GIP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연령요소는 나이가 젊을수록 퇴직연령이 많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여 <표 3-11>에서 높게 책정된다. 최종금액은 GIP의 최고액 수준이며, 장해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100% 지급된다. 그러나 보다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GIP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는데, 등급별 적용 GIP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준 1-4 (A 등급) GIP 100%
- 기준 5-6 (B 등급) GIP 75%
- 기준 7-8 (C 등급) GIP 50%
- 기준 9-11 (D 등급) GIP 30%
- 기준 12-15 GIP 지급 제외

GIP는 군 복무 중이어서 군 봉급을 받게 되면 지급되지 않고, 군복무 보상이 12단계 기준 이상에서 결정되면 전역 후에 지급된다.

<표 3-11> GIP 요소

Age at last birthday	GIP Factor	Age at last birthday	GIP Factor
16	0.905	37	0.790
17	0.902	38	0.781
18	0.898	39	0.772
19	0.894	40	0.762
20	0.891	41	0.751
21	0.887	42	0.740
22	0.882	43	0.728
23	0.878	44	0.715
24	0.873	45	0.702
25	0.869	46	0.687
26	0.864	47	0.672
27	0.859	48	0.656
28	0.853	49	0.638
29	0.847	50	0.619
30	0.841	51	0.599
31	0.835	52	0.577
32	0.829	53	0.554
33	0.822	54	0.528
34	0.814	55	0.500
35	0.807	Over 55	0.500
36	0.799		

3) 유족보상

가) 배우자

유족인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보증소득(SGIP)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군병사의 GIP와 같은 식으로 사망 당시의 나이를 고려한 요소를 급료에 곱하여 산출하는데, 생존자의 GIP의 60%를 배우자유족에게 지급한다. 만일 배

우자가 국군연금계획에 따라서 지급되는 혜택을 받는 연금이 있으면 연금의 75% 까지 감액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유자녀

유자녀에게는 CP(Children Payment)가 지급된다. 두 명까지의 유자녀에게는, 사망자의 GIP의 15%가 각 자녀에게 지급된다. 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 GIP의 15%가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각각 지급되고 셋째 자녀는 10%가 지급된다. 네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GIP의 40%가 자녀들 사이에 균등 배분된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성인 부양가족이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네 명의 자녀까지 사망자의 GIP 25%가 각 자녀에게 지급된다. 자녀가 네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GIP 100%를 자녀들 사이에 균등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군인연금혜택이 있는 경우, 연금의 75%까지 감액된다.

제3절 독일

1. 보상금

독일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의 보상은 재활치료, 전쟁신체불구자재활운동, 환자치료, 전쟁희생자부조, 상이자연금, 장기요양추가수당, 장제비, 사망수당, 유족연금과 유족자 사망 시의 장제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 상이보상

독일에서는 보상의 기준은 상이등급이 아니라, 소득활동능력의 감소정

도(Minderung der Erwerbsfaehigkeit; 이하 MdE라 약칭)이다. 이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원호법 제30조 1항은 “MdE는 일반적인 생계활동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MdE를 확인하는 1차적 출발점은 의학적 진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호청구를 신청한 자는 각 지방 원호청에 소속된 의료진단소 소속 전담의료진이나 원호청이 지정하는 전문의의 진단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독일 제도의 특성상 의학적 기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Md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침해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소득활동 능력이 감소된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심리적 질환이나 고통 역시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MdE를 판단할 때에는 원호법에 비추어 손상의 결과라고 인정된 건강상의 장해로 말미암아 소득을 위한 통상의 근로능력 및 이를 경제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가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연방원호법 제30조 1항).

연방원호법은 소득활동능력의 감소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상이 어떠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원호법상 원호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손상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 척도를 확보하는 것만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람이 부상을 입기 전에도 이미 암 질환으로 인해 소득활동능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소득활동능력의 감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확인할 뿐, 당사자의 구체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감소정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비율을 감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득활동능력의 감소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능력상의 하자가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이런 이유에서 손상의 결과로 말미암아 야기된 상이도 함께 감안하여 그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MdE의 확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

추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기준선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방보건사회부는 정기적으로 의사의 소견서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발간하고 있다. 당해 지침서에 열거되어 있는 백분율은 소견서작성자로 하여금 개별 사례마다 MdE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출발점이 된다. 지침서는 장기간에 걸친 소견서작성경험을 압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달까지도 감안하여 최신의 전문지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다. 지침서에는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하여 MdE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표로 표시하고 있다. 현재 당해 지침서는 행정규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소견서 작성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연방사회법원 역시 지침서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원호법 제30조 1항 5문은 현저한 신체적 상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백분율 이상의 MdE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해 조문에 근거하여 공포된 행정규칙 5호는 36개의 일정한 신체적 상이에 대해 인정되는 최소한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다. 당해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2>과 같다.⁴⁾

<표 3-12> 신체적 상이유형별 MdE 비율

상이내용	최소 백분율
뇌기능 장해가 없는 두개골 파손	30%
기능장해를 동반한 뇌손상	50%
중대한 기능장해를 동반한 척수부상	70%
한쪽 다리 허벅지까지 절단된 경우	80%
한쪽 다리 무릎 이하가 절단된 경우	70%
한쪽 팔의 팔굽 위까지 절단된 경우	80%
한쪽 팔의 팔굽 아래가 절단된 경우	70%
한쪽 눈 실명	30%
양쪽 눈 실명	90%
한쪽 손 절단	50%

4) 상세한 내역은 Ratgeber zum Behindertenrecht und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2005, 742면 참고

소득활동능력 감소율(MdE) 30% 이상의 상이자는 MdE율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MdE가 50% 이상이고 만 65세가 넘는 고령 중상 이자에 대해서는 매월 기초연금액을 증액 지불한다. 기초연금은 정식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건강과 행복감의 상실을 보상하고, 손상의 결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기초연금은 생계부양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표 3-13> 독일 연방원호법에 따른 장해보상수준 (2008)

월별 유로	수준
상이자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활동능력감소율 30 %	120
소득활동능력감소율 40 %	164
소득활동능력감소율 50 %	221
소득활동능력감소율 60 %	279
소득활동능력감소율 70 %	387
소득활동능력감소율 80 %	468
소득활동능력감소율 90 %	562
소득활동능력감소율 100 %	631
기초연금에 대한 연령가산	
소득활동능력감소율 50%와 60 %	24
소득활동능력감소율 70%와 80 %	30
소득활동능력감소율 90%와 100%	37
I 등급	72
II 등급	150
III 등급	224
IV 등급	299
V 등급	373
VI 등급	449
중증상이자에 대한 추가수당	
* 상이자에 대한 조정연금(Ausgleichsrente)	
소득활동능력감소율 50 %와 60 %.	387
소득활동능력감소율 70 %와 80 %	468
소득활동능력감소율 90 %	562
소득활동능력감소율100 %	631
* 배우자추가수당	68
장기요양추가수당	
I 등급	266
II 등급	455
III 등급	645

IV 등급	829
V 등급	1,078
VI 등급	1,325

나. 유족보상

상이자가 손실의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유가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가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미망인, 유자녀 및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손실의 결과로 사망한 상이자의 유자녀는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연금청구권이 있는 상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관장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상이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은 상이자가 사망한 달에 수령했던 원호급여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표 3-14> 독일 연방원호법에 따른 유족보상수준 (2008)

(단위: euro)

급여의 종류	대상자	수준
기초연금	미망인	378
* 조정연금	미망인	412
기초연금	유자녀(부모 1명 사망)	107
	유자녀(부모 쌍방 사망)	199
* 조정연금	유자녀(부모 1명 사망)	187
	유자녀(부모 쌍방 사망)	260
* 부모연금	양친	513
	단친	357
* 다 자녀 상실에 대한 추가 액, 자녀 당	양친일 경우	94
	단친일 경우	69
* 유일한 자녀, 마지막 자녀, 모든 자녀 혹은 적어도 세자녀를 상실했을 때 추가수당	양친일 경우	290
	단친일 경우	210
** 상이자의 사망시 장제비	손실자가 연금자격자이고 손실의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	1,523
	손실자가 연금자격자이고 손실의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	763

	향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손실자가 연금자격자가 아니고, 손실의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	1,523
** 유족의 사망시 장제비	적어도 한명의 유자녀를 남긴 미망인이 사망할 때	1,523
	그 밖의 경우	763

* 소득과 관계되는 급여(조정연금, 부부추가수당 및 부모연금)는 지급 최고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급여액은 소득에 따라 감액된다.

자료: Gesetz ueber die Versorgung der Opfer des Krieges(Bundesversorgungsgesetz-BVG), 2008.

2. 주요 수당

가. 중상이자수당

손상의 결과에 따른 건강상의 장해가 심하여 소득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중증상이자에 대해서는 매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중증상이자 수당은 MdE 10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이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연방원호법은 중증상이자를 6등급으로 분리하여 등급에 따라 수당의 지급액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건강상태나 고령 또는 본인의 실책이 아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노동을 통한 소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소득활동이 제한되거나 또는 이를 위해 평균이상의 현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증 상이자에 대해서는 조정연금(Ausgleichrente)을 지급한다. 조정연금의 목적은 중상이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중상이자의 과책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부조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정연금은 보상적 성격보다는 배려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며, 그 때문에 조정연금은 중상이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나. 가족수당

중상이자가 배우자가 있을 때는 매월 68유로(구 동독 지역은 60유로)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 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한계선을 초과하여 보상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상이자라 할지라도, 산정표상의 단계에 비추어 고정액에 못 미치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중상이자는 매 자녀마다 자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자녀양육보조금(Kindergeld)이 지급될 때에는 자녀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 간병수당

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함께 상이자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절 이스라엘

1. 보상금

가. 상이보상

일시금은 1996.1.1 처음으로 상이등급 인정을 위한 소청을 제출하고 영구상이등급이 10~19%인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이등급에 따라 108~215개월분 연금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표 3-15> 이스라엘의 일시보상금

상이정도	포함되는 수당 개월 수
10%	108
11%	125
12%	142
13%	155
14%	166
15%	175
16%	185
17%	193
18%	201
19%	215

나. 상이연금

상이연금은 상이의 결과로 초래된 수입 손실과 장해로 인한 고통과 불편에 대한 보상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상이제대 군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상이연금은 상이법에 의거, 복무관련 장해상이 정도 20% 이상(단, 1996.1.1일 이전 상이자는 10%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 영구 상이자는 평생연금이 지원되며, 일시 상이자는 장해정도의 변화가 혜택의 증가, 감소 혹은 중단을 보장할 만큼 확실할 때까지 지급된다.

연금등급은 상이율(13개)에 따라 결정되며, 재활국내 보상금지급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100% 상이연금은 중간급 공무원 봉급의 91% 수준으로 책정되며, 연금인상은 봉급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the cost-of-living index)에 따라 연동된다.

<표 3-16> 이스라엘의 상이연금 지급액

상이등급	연금 금액(NIS)
10%	331.28
15%	496.92
19%	629.43
20%	662.56
30%	993.85
40%	1,325.13
50%	1,656.42
60%	1,987.70
70%	2,318.98
80%	2,318.98
90%	2,981.55
100%	3,312.84
+100%	4,637.98

다. 유족 보상

사망 군인 가족(연금 및 재활)법(1951) 및 이후 제정되어 온 개정안에 의거, 전쟁 혹은 복무로 인한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한(단, 고의적 부주의로 인한 결과 제외) 군인 및 1949년 상이법에서 인정된 상이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1) 배우자연금

자녀가 없는 45세 미만 미망인의 경우, 자신의 수입과 상관없이 미혼 중간급 공무원 봉급의 131.3%에 상응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21세 이하 자녀 1명을 부양하는 미망인에게는 중고위급 공무원 봉급의 157%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는 1인당 기본연금의 11%씩 추가 지급된다.

성년 자녀가 있는 미망인에게는 21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미망인 연금액의 89%를 지급한다. 45세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미망인은 자녀가 모두 성장한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의 85%를 지급한다.

2) 유자녀 연금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녀에게는 배우자연금의 1/3수준의 유자녀연금이 지급된다. 친모와 떨어져 친척, 양부모 또는 후원자와 같이 사는 고아에게는 월별 특별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3) 부모연금

수입이 없는 전사자의 부모(모두 생존)는 미혼 중고위급 공무원 봉급의 117.4%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부모 중 한 분이 계실 때에는 상위 언급한 연금의 80%를, 각 미성년자(18세까지)에게는 전술한 연금액의 10%씩 추가된다.

그러나 수입이 있는 부모는 그들 수입의 54% 이하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최소 연금은, 수입이 없는 부모(모두 생존)가 받는 연금의 15%의 수준이 지급된다.

4) 보조금

미망인, 유자녀, 부모에게 미망인 재혼 보조금, 유복자 출산 보조금, 휴가비 지원, 결혼비용지원 등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라. 보조 수당

1) 질병 수당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상이로 인해 초래된 의료조

건으로 의해 일을 할 수 없으며 여타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연금 대신 질병 수당이 지급된다. 질병 수당은 중간급 정도 공무원의 봉급에 준하여, 월 단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동 수당은 복무 전에 수입이 없으며 일을 하지 않은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데, 이전에 수입이 있었던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 전 본인이 받았던 최고 급여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지급된다. 상이등급이 1~10%인 상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실업수당

복무관련 상이 20% 이상(혹은 1996.1.1일 이전 상이자는 10% 이상)인 제대군인이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실직기간 동안 특별보조금을 월별로 지급한다. 단,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을 위해 등록하고, 여타 생계수단이 없으며, 이전에 어떤 형태의 경제적 재활(economic rehabilitation)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취업불능자 부가연금

상이 50% 이상인 제대군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영구히 자력갱생할 수 없으며 적절한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연령에 따라 부가연금이 지급된다.

4) 경로 보조금

상이연금 수혜자가 65세(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면 경로보조금이 지급 (기본연금의 10% 추가)된다.

5) 중상이 노령자 특별수당

상이등급 40% 이상, 55세 이상의 경우 연금의 7~21%가 지급된다.

<표 3-17> 이스라엘 중상이 노령자 특별수당액

상이등급 50-100% 이상	55-56세	100% 상이자 보상금액의 7% 추가
	57-59세	100% 상이자 보상금액의 14% 추가
	59세 초과	100% 상이자 보상금액의 21% 추가
상이등급 40-49%	57-59세	100% 상이자 보상금액의 7% 추가
	59세 초과	100% 상이자 보상금액의 14% 추가

제5절 캐나다

2006년 4월 1일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협역 및 제대 군인 보상 법안」(The Canadian Forces Members and Veterans Re-establishment and Compensation Act)을 발효시켰다. 「제대군인 신헌장」(New Veterans Charter)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캐나다의 제대 군인 지원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2006년 5월 이후 신규자는 신헌장의 적용을 받고, 신헌장 이전 대상자는 기존 연금제도를 적용받는다. 신헌장의 도입으로 기존의 상이연금은 폐지되어, 일시금으로 전환되었다.

1. 기존의 제도 대상자

기존의 제도 적용자에게는 상이연금, 간호수당, 중상이수당, 피복수당이 지급된다. 상이연금은 상이율 5% 이상에게 해당되는데, 20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상이원인의 직무 관련성에 기초한 5개 연금등급과 장해율을 종합 평가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특정장해 및 부양가족에게는 가산금이 지급된다. 상이등급은 상이등급표(Table of Disabilities)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상이등급표는 육체적 장해를 측정하는 「의학적 손상등급표」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삶의 질 등급표」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상이등급은 그 두 등급표에서 얻는 점수의 합계이다. 합계가 100%를 넘는 경우에는 100%로 한다.

연금급여율(rate of pension)은 연금수급권(1/5~5/5)에 상이등급 (1%~100%)을 곱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연금수급권이 3/5이고 장해 등급이 25%이면 연금급여율은 15%가 된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급여율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그 개인의 연금급여율로 한다. 개인의 통산 연금급여율이 1~4%일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제공하며, 5%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으로 제공한다. 결정된 연금급여율(기본급여) 이외에 배우자와 18세 미만(재학 중일 경우에는 25세 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연금급여율(부양가족급여)이 추가로 제공된다.

<표 3-18> 상이연금 월급여액 (2008)

연금급여율	기본급여액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후
5%	\$113.28	\$28.32	\$14.73	\$10.76	\$8.50
100%	\$2,265.50	\$566.38	\$294.52	%215.22	\$169.91

자료: <http://www.vac-acc.gc.ca/clients/sub.cfm?source=dispen>

2. 신현장 적용대상자

가. 재정지원프로그램(Financial Benefits Programs)

1) 소득상실급여(Earning Loss Benefits: ELB):

소득상실급여는 복무와 관련하여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이 적절한 직업

을 찾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제공되며 급여수준은 제대 전 봉급총액의 75% 이상이다. 수급대상자는 재활프로그램이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혹은 복무와 관련하여 상해 혹은 질병을 입어 사망했거나 복무로 인해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현역 혹은 제대군인의 유가족이다. 사회적 정년인 65세가 지났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제공하는 적절한 직업을 가진 제대군인에게는 지금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의 생활보조금으로 상이연금만이 제공되었다. 「제대군인 신현장」의 도입 이후에는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서 소득상실급여와 뒤에서 서술하는 영구장해수당 및 상이보상금이 제공된다. 말하자면, 기존의 상이연금이 소득상실급여, 영구장해수당, 상이보상금의 세 가지 급여로 나뉜 것이다.

2) 영구장해수당(Permanent Impairment Allowance: PIA)

영구장해수당은 회복할 수 없는 장해를 입어서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이제대군인에게 제공된다. 영구장해수당은 소득상실급여와 동시에 수급 받을 수 있다.

3) 보충퇴직급여(Supplementary Retirement Benefits: SRB)

이 급여는 소득상실급여를 받고 있는 제대군인 가운데서 65세에 도달하였거나 적절한 직업을 갖게 되어서 더 이상 소득상실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소득상실급여를 받았던 제대군인의 유가족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4)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Canadian Forces Income Support: CIS)

이 급여는 복무와 관련하여 장해를 입었지만 65세를 넘었거나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소득상실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제대군인과 재활프로

그램을 수료한 후 저임금의 직업을 갖게 된 제대군인에게 비과세로 매월 제공된다.

나. 상이보상금(Disability Award)

상이보상금은 복무와 관련하여 장해를 입은 상이제대군인에 대해 제공되며, 금액은 장해정도에 따라 최고 \$260,843.84(2008년)로 일반적인 산업 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장해보상금에 비해 조금 높다. 이 보상금은 생계비용지수(cost-of -living index)와 연동되어 있다. 「제대군인 신현장」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이 일시금은 소득상실급여 등 보훈제도상의 다른 급여의 수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공된다.

다. 수당

1) 피복수당(Clothing Allowance)

피복수당은 상이보상금을 받는 현역 혹은 제대군인 가운데서 신체상의 이유로 인해서 기성복을 고쳐 입어야하거나 특수 제작된 의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달 제공된다.

2) 억류급여 (Detention Benefit)

억류급여는 복무 중에 적군, 대치 병력, 혹은 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30일 이상 구금되었거나 포로상태에서 탈출한 현역 혹은 제대군인에게 제공된다.

3. 유족보상

가. 기존의 제도 적용자

기존의 제도 적용자에게는 유가족 수당(Surviving Dependents Benefits) 제도를 마련하여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와 관습법상 배우자유족에게 1년간 보인 사망당시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당자의 경우 간호수당, 특수장해수당 포함)한다.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본인이 연금을 48%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독신자 기본연금 100%금액의 75% 수준)한다. 본인이 연금을 5~47%의 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을 지급(본인 사망당시 지급된 상이연금액의 1/2 해당액)한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자녀는 유자녀수당을 받고,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생전에 부모·형제·자매를 부양했으나 그들이 현재 적절한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형제자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나. 신현장 적용 대상자

1) 재정지원프로그램(Financial Benefits Programs)

재정지원프로그램은 복무관련 상이(질병)으로 사망했거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현역 도는 제대군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수준은 소득상실급여, 보충퇴직급여, 캐나다군 소득보조금 등이 적용된다.

2)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 사망 또는 복무 중 상해를 당하여 30일 이내에 사망한 현역군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일시금으로 \$260,843.84(2008년)가 지급된다. 이 보상금은 생계비용지수(cost-of -living index)와 연동되어 있다.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외국의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특징들을 통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이보상수준은 장해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능력을 고려한 장해율에 따라 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수준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통해 장해부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보상수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문제는 판정으로 인한 불공평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을 높게 받기위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체계적인 장해율 중심의 판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훈보상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재해보상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상이보상에 있어 경상이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국, 이스라엘은 장해율 20%이하, 독일은 30% 이하, 캐나다는 5%이하에 해당하는 상이자에게 일시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상이자들도 충분히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소득활동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비전시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은 경미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운동 등으로 인한 짚은 충이 주 대상일 가능성이 많다.

짚은 경상이자의 증가는 보훈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시금제도를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상이자 일시금제도로 인해 발생 가능

한 문제들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훈급여체계의 두 축인 보상금과 수당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왜냐하면 상이보상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따라서 수당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이보상체계가 장해율에 정비례하는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중상이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부가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보상체계 개편방향에 맞게 수당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공헌과 희생’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부가수당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족부양수당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부언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보상금이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으며, “영국, 이스라엘의 경우에 55세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장해율에 따라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복잡하고 다양한 수당형태가 존재한다. 보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가족부양수당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미 한국의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통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적용대상이 극히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보장수준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경제활동 유무와 가구의 소득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훈대상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활동유무 및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을 조사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당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장 보훈급여금체계 개편 방안

제1절 보훈급여금 개편의 기본 방향

보훈보장은 사회보훈적 측면에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장이라는 명예적 측면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득감소 또는 중단에 대한 소득보장과 비용발생에 대한 비용보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분을 위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훈적 보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이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하기보다는 별도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서 이론적 측면에서 성격 규명을 사회보장의 기준으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보훈보장에서 실질적 보장수준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적 접근과 보훈보장의 성격적 접근을 조화하는 데 상당한 거리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같은 체계적 격리성은 한국에서는 보훈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 상황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국가 보훈적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 급여와 상호간의 조화 또는 보완적 역할 정립이 어려웠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훈환경이 변함에 따라 보훈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조화 또는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요인은 사회정책관련 제도들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노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상응하는 정책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의 보훈급여금체계의 개편방향은 무엇보다도 ‘희생과 공헌’의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김승권 외, 2007).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보훈급여금 (-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이 상호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희생과 공헌’에 따른 형평성제고란 보훈보상이 배상개념의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라 보상(reward)인 점이 명확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상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시대별, 시기별로 ‘희생과 보훈’의 경중(輕重)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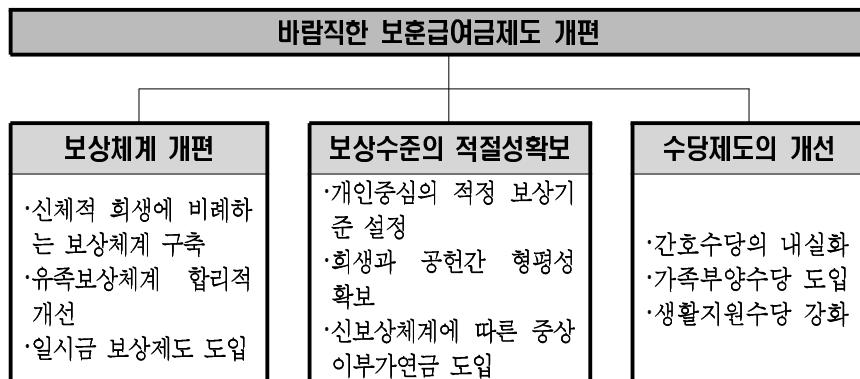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규정된 동원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조합들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장해율에 정비례하는 상이일시금 지급방식은 단순히 ‘신체적 희생’으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에 역점을 둔 보상체계이고, 미국이나 독일처럼 장해정도에 따라 누적적으로 상승하는 보상금체계는 ‘희생과 공헌’을 동시에 고려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 등의 일시금제도가 보상방법의 차이일 뿐 결코 ‘공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다양한 수당을 통해 상이의 중증도와 ‘공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는 형식적인 금전적 보상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병행되는 실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는 본인뿐 만 아니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을 고려한 보상을 의미하고, 특히 본인 사망시 배우자등의 유족 등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훈급여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보상체계, 보상수준 및 수당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제도의 장해보상의 모습과 주요 외국의 보훈보상체계 및 수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보훈급여금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4-1> 보훈급여금제도 개편 방향



첫째,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보상금은 희생자체에 대한 보상과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체계 또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희생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을 적어도 일반 사회보상 수준에 맞추어 보상함으로서 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 군인에 대한 보훈보상이 민간인

에 비해 미흡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상보다 5%정도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인의 산재보상이나 교통사고 등에 비해 군에서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공헌만 있는 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외에 별도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는 사례가 거의 없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물질적 보상근거와 기준 불명확으로 지속적인 보상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보훈대상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들이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보상금을 고려한 유족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해율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일정을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7급 경상이자에게도 중상이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일정 수준이하의 경상이자는 일시금으로 보상하고 당해 신체부위에 대해 의료지원 등 필수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가 의존적 보상형태는 과거 미약한 국가 경제력과 소액정기지급으로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 본인과 유족 등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연금형태의 보상금보다는 다른 재해보상제도와 동일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결혼, 출산, 부모 부양의식 등에 대한 태도 또는 경향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

형태 또는 규모 등도 점차 단순화 내지는 소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변화되는 가구성원수를 평균가구 또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상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기준의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상이정도, 부양가족수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수당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금수준은 적절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개별여건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당 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체제에서 수당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보훈급여금체계를 기본보상금으로 기본적 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보장으로 중증장해에 해당되는 중증상이에 대한 추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수급 당사자가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와 중증장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또는 중증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활동소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과 관련된 수당은 소득보장에 있어서 가족의 생활유지라는 점을 감안한 일반적인 수당으로 복잡한 수당체계를 대체하는 가장 일반화된 사회보장적 보장급여의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당제도는 복잡한 제도를 하나의 형태로 단일화하고 급여수준은 장해수준의 중증여부에 따른 추가보장과 가족상황을 감안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보상금 수급자 및 유족에게 지불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미만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충적 급여성격을 갖는다. 즉 보상금을 받는 보훈대상자가 각종수당이나 보호조치를 통하여 일정수준의 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보훈적 차원의 보충급여는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도입·확대 등으로 보다 영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기초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 그리고 제도도입 20년이 지난 국민연금제도 등으로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정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수급자들도 보훈가족으로서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훈기본선(가칭 '국가보훈선') 이상의 소득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수당제도의 개편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제2절 보상체계 개편

1. 상이보상금

가. 국내 유사제도의 장해보상

1) 국내 사회보험제도의 장해보상

군인연금제도는 신체장해등급을 7급으로 구분하여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한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에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급여수준은 재해당시의 보수월액에 신체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 12개월, 제2급 8개월, 제3급 6개월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제1급 80%~제14급 15%까지 장해연금을 지급하거나 장해연금

5년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일시금방식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은 가입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상,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기본연금의 100%-60%와 부양가족연금을 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해4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4-1> 국내 장해보상제도 비교

장해 등급	군인연금 상이7급	공무원연금 폐질14등급	국민연금 장해4급	산재보험 장해14등급	국가배상법 장해14등급
급여 수준	1급: B × 12 2급: B × 8 3급: B × 6	1급: B × 80% 2급: B × 75% : : 14급: B × 15%	1급: 기본연금 + α 2급: 기본연금액 × 80% + α 3급: 기본연금액 × 60% + α 4급: 기본연금액 × 225%	[표4-2참조]	월급액(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취업가능기간
급여 방법	일시금	연금	1,2,3등급 연금 4등급 일시금	1~3등급 연금 4~7등급 선택 8등급이하 일시금	일시금

주: B는 보수월액, α는 가족부양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14등급으로 구분하여, 1~3등급은 연금으로, 4~7등급은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8등급부터 1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 4-2>에서처럼 등급별 보상일 수가 정해져 있는데, 1~14등급 모두 장해보상일수가 있는 이유는 장해등급 판정이후 연금 수급도중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하는 경우, 등급 차이로 인한 보상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표 4-2 > 산재보험 등급별 보상일수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일시금 일수 대비 연금 일수 (B/A)
	수 준(A)	1급대비(%)	수 준(B)	1급대비(%)	
제 1 급	329일분	100.0	1,474일분	100.0	4.48
제 2 급	291일분	88.4	1,309일분	88.8	4.50
제 3 급	257일분	78.1	1,155일분	78.4	4.49
제 4 급	224일분	68.1	1,012일분	68.7	4.52
제 5 급	193일분	58.7	869일분	59.0	4.50
제 6 급	164일분	49.8	737일분	50.0	4.49
제 7 급	138일분	41.9	616일분	41.8	4.46
제 8 급			495일분	33.6	
제 9 급			385일분	26.1	
제 10 급			297일분	20.1	
제 11 급			220일분	14.9	
제 12 급			154일분	10.4	
제 13 급			99일분	6.7	
제 14 급			55일분	3.7	

한편 급여수준을 보면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1급은 329일분을 받고 7급은 138일분을 받는다. 일시금 수급이 가능한 4급의 경우 1,012일분을 7급은 616일분을 받는다.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급의 급여일수를 기준(100)으로 각 등급별로 보상비율을 보면 약 10% 간격으로 급여일 수가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시금 선택이 가능한 7급의 경우 연금은 41.9, 일시금은 41.8로 약 40% 수준이었으며,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급여일수도 1급의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의미는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8등급은 33.6%로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장해 30%이하는 일시금으로 선택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일시금의 급여일수는 연금일수의 4.5배외로 설계되어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상이일시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보상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의 장해 배상은 피해자 완치 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당시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노동상실률을 적용하는 데,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려하게 된다.

<표 4-3>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장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노동력 상실률(%)	10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5	10	5

나. 상이보상체계의 합리화

보훈보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체계는 신체적 기능에 국한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에 따른 소득감소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보훈급여와 관련된 상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등급은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는 1항에서 3항까지 6급의 경우는 2항까지로 실제 등급은 10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급은 경제활동 소득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 손상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 기준이 공무원연금의 10개 부위 14개 등급 (138개 항목)과 서로 달라 연계성이 없는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한편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등급에 따라 차등화를 하고 있으나 첫째는

장해등급의 중증에서 경증에 이르기 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새로이 추가된 7등급의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1급1항의 경우 186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차등화 하여 6급2항의 경우 82.7만원을 지급하는 순차적 급여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7급의 경우 이와는 전혀 다른 27.5만원을 지급하여 급여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즉,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정책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급에 대한 연금액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경증 등급에 대한 판단이 7급 수준의 경우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의 보훈적 명예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히려 바람직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평시의 군복부 등으로 발생하는 7급은 수급 개시 연령이 매우 낮아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1) 장해율을 고려한 상이보상금체계의 개선

향후 발생하는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라는 추상적인 기준대신 신체희생도(장해율)로 보상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행처럼 등급별로 할 수도 있으나, 각 등급의 보상수준이 장해율과 다르다면 보상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범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장해율 판정기준 개발을 통해 장해율에 근거한 손실된 소득능력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단순하게 장해율만 가지고 보상기준을 설정할 경우, 보상수준과 장해율과의 관계를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장해율 증가만큼 보상수준이 증가되도록 하는 정비례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장해율 증가보다 보상수준이 더 증가하는 누진형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등급제도가 누진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영국등과 같은 정비례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장해율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상이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상이자를 위한 특별부가연금을 추가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합리적인가는 현행 급여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 도입시 신·구 상이자간에 보상금 격차가 심할 경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상이보상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과 무의탁여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당제도 개선을 통하여 신구제도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당제도개선 방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중상이부가연금 도입

장해율에 따라 일정률의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중증이상의 상이자에는 중상이 부가연금을 추가적으로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향후 발생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라는 추상적인 기준 대신 신체희생도(장해율)로 보상기준을 단순화하고, 현행 간호수당의 일부를 중상이부가연금으로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하기로 한다.

3) 상이일시금제도 도입

우선 상이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상금을 연금으로 수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최근 신규로 발생하는 상이7급 수급자는 대부분 젊은 층으로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이7급의 경우 월 27만5천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고, 근로가능기간을 최대한 늘려 생애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장해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들의 경우에는 장해율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장해율이 20%미만인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장해율 10%미만인 경우에는 보상금조차 없다.

2. 유족보상금

가. 국내 유사제도의 유족급여

군인연금에서는 퇴직(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는 퇴역(상이)연금 액의 70%, 20년 미만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에게는 보수월액의 55%, 20년 이상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는 보수월액의 65%를 지급한다. 그러나 공무 외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공무원연금에서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족급여에는 ①유족연금, ②유족연금부가금, ③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④유족연금일시금, ⑤유족일시금, ⑥유족보상금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연금에서 유족과 관련된 급여 규정은 공무원의 노후보장과 관련된 퇴직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실제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유족급여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70%
	유족연금부가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25%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 × 0.25 × (36-퇴직연금수급월수) × 1/36
	유족연금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액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액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보수월액의 36배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2007.

한편 공무원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관련 급여 중 유일하게 공무상 재해나 질병과 관련된 것은 유족보상금 제도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지급하며,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한다. 이외에 공무원연금에서 사망조위금이 지급되는 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시 유족에게 보수월액의 3배 지급하며 이 경우 공상여부와 관계가 없다.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상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20년 이상의 경우와 그 이하 여부를 구분해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재직기간에 국한된 급여수준 형태로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공상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별도로 보수월액의 36배 지급하는 것으로 공상에 대한 보상으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⁵⁾

일반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보험은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하였

5)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에서는 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 관련성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상황에 있다. 즉, 지병 등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공무수행이 경합된 재해(간접노동재해)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된 경우(직접노동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함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간접노동재해의 경우 대체적으로 그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이로 공상의 가·부 결정으로 보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은 수혜의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외 사망이라 할지라도 공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종전의 공무원연금의 유족부조금 제도는 1981년 개정 이전까지는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공무수행과 직접 기인되어 사망 시: 보수월액의 36배 지급하였고, 공무수행이 평소의 질병과 경합으로 사망 시: 18배 지급하였다. ('81. 5. 1 보수월액의 36배로 일원화)

으나 최근 연금만 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다. 급여는 유가족의 수에 따라 사망근로자 평균임금의 67%(4인 이상)부터 52%(1인)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한 사망 시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일시금 수준에서 장의비가 지급된다. 장의비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일종의 사망 일시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장의비의 상하한선 제도 도입은 최저와 최고급액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망일시금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4-5>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조건 및 수준

급여 종류	정의	지급 요건 및 형태	급여 내용	청구자	비고
유족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 재 근로자 의 사망 시 그 유족 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 로 추정되는 경우 · 연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기초연액의 52%부터 67%까지 (기본금액47% + 1인당 5%가산, 20%까지 가산 가능) 	수급권자 (유족)	사망 추정 3개월 이 경과 된 이후 사망과 동일
장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업무 상 사유로 사망 한 경우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후 · 일시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최고금액: 10,360,275원 · 최저금액: 7,078,875원 (적용기간 2004.9.1-2005.8.31) 	장례 실행자	

자료: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자료, <http://www.welco.or.kr>

나. 유족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

보훈급여금에 있어서 지급체계는 순직(사망) 유족과 상이유족의 구분

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1급에서 5급의 유족에게는 2008년 현재 8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6급 비상이 사망이나 7급 상이 사망의 경우에 배우자의 경우 30.8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부모에게는 29.2만원을 자녀에게는 45.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규정의 특징은 급여수준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 순직유족과 상이유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점과 등급을 크게 둘로 구분해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점 그리고 사망한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등화 하는 체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 형태는 사망 이전에 지급하던 보상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점과 상이유족의 경우 사망 전 상이등급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 형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급1항 상이사망유족과 5급 비상이사망 유족의 보상금이 동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표 4-6> 보훈 유족보상금 체계

		대상별	보상금(천원)
유족	배우자	1~5급유족	860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308
	부모	1~5급유족	844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292
	자녀	1~5급유족	1,000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456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2008.

1) 본인보상금의 일정률 적용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유족연금은 종전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망 전 연금의 일정률을 지급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인연금의 경우 55% - 70%를,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

금액의 70%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본인 기본연금의 40~60%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보훈유족보상의 경우에도 본인 보상금의 60%정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유족일시금제도 도입

유족보상금은 배우자의 경우 재혼을 하거나,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면 수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인위적으로 발생하던, 자연적으로 발생하던 간에 유족보상금의 중단은 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종전 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약 2~3년분의 보상금 총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녀사망으로 인한 수당제도의 경우에도 유족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사망일시금

가. 국내 유사제도의 사망일시금제도

1) 사회보험제도

군인연금제도에서 복무중 사망한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으로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① 공무원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 ②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

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제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2) 민간인에 대한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의 사망일시금 장해보상의 경우와 마찬기지로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유족배상을 하고, 장례비로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지급한다.

나. 보훈급여금의 사망일시금제도개선

보훈급여금의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사망으로 갑작스러운 보상금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표 4-7> 와 같이 지불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때문에 기타 유사제도와 같은 수준의 장제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사망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남아있다면, 생활수준 또한 종전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족사망의 경우, 적정수준의 장제비가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유족의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장례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표 4-7>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사망자별	지급액 (천원)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나.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 이 아닌 자 다.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 인 자	1,504 1,244 927
2. 재일학도의용군인	927
3. 연금지급대상인 유족	927

제3절 보상금수준 개선방안

1. 국내 유사제도의 보상수준

가. 사회보험제도의 장해보상기준

1)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재해 또는 질병발생 3개월전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 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산출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따르게 되며 일용직근로자나 저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에 대해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득파악이 잘 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평균임금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사업주가 그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보험급여의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 고시로 발

표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최저보상기준금액(일)은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액의 약 1/2배인 46,933원이며, 최고보상기준금액(일)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액의 약 1.8배인 157,220원으로 발표되었다.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별 근로자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노동 부령으로 정하여 14등급으로 나누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중심으로 그 기준을 선정하여 보훈급여에서의 장해등급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의 등급별 지급방법은 장해등급 14등급 중 1~3등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등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3등급의 중상이자는 연금만으로 수급하도록 하여 산재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8등급 이하의 경상이자는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현행 산재보험급여 산정방법

- 평균임금 = $\frac{\text{산정사유발생일}^* \text{이 전 3월간의 임금총액}}{\text{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산재보험급여액 = 평균임금 × 보상일수

* 산정사유발생일 : 업무상사고- 사고 발생한 날
업무상질병-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2) 국민연금

일반 사업장근로자와 자영자들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제도의 장해보상의 기준은 수급시점에서 전체 가입자의 과거 3년 평균소득과 피보험자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2008년 현재 기본연금식은 $1.5 \times (A+B) \times (1+0.05n)$ 으로 본인의 생애평균 소득 B 뿐 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3)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장해연금은 피보험자신의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20년 가입한 경우, 장해보상 기준소득은 본인의 최종보수이다.

군인연금의 기준소득은 평균보수월액으로 이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고려하여 재평가한 후, 평균한 것으로 최종보수월액과 유사하다.

4)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상의 보상기준은 피해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다.

나. 외국의 장해율별 보험보상수준

장해율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유형을 구분해 보면, 기본보상금 내에 중상이부가금과 가족부양수당을 포함하는 국가 - 미국, 독일 등 - 와 장해율에 정비례하는 국가 -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상체계가 장해율에 정비례하는 국가들은 별도의 중상이부가연금을 설정하고 있거나, 수당제도에서 가족부양수당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상수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8>은 장해율별 상이보상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등은 장해율 10% 증가 시마다 보상수준이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장해율 100%에서는 보상금이 현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주요국의 상이보상수준

장 해 율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기본 보 상 금 (M\$)	등 급 간 차 이	전 쟁 상 이 연금 (£)	등급 간차 이	일 시 금	등급 간차 이	보 상 금 (€)	등급 간차 이	일 시 금 (캐\$)	등급 간차 이	일 시 금 (SR)	등급 간 차 이
10%	123	-				-			25	-	331	
20%	243	120	1,514		126	-			50	25	663	331
30%	376	133	2,271	757	189	63	118		75	25	994	331
40%	541	165	3,028	757	252	63	161	43	100	25	1,325	331
50%	770	229	3,786	758	316	64	218	57	125	25	1,656	331
60%	974	204	4,543	757	379	63	275	57	150	25	1,988	331
70%	1,228	254	5,300	757	442	63	381	106	175	25	2,319	331
80%	1,427	199	6,057	757	505	63	461	80	200	25	2,982	663
90%	1,604	177	6,814	757	568	63	553	92	225	25	3,313	331
100%	2,673	1,069	7,571	757	631	63	621	68	250	25	4,638	1,325

3. 보훈보상금수준의 합리적 개선

가. 현행 보상수준

현행 보상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표' 중 3인 가구 전국가계평균소비지출월액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으로 한다. 예로서 2007.12. 기준 3인 가구 소비지출은 1,872천원으로 2008년 현재 1급1항 보상금 1,864천원과 유사하다.

그러나 점차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미혼인 일반사병에게 3인 가구 기준의 소비지출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상이의 정도가 중증이어서 부가적으로 특수부가연금을 받는 형식이라면 몰라도 상이정도가 경증으로 소득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인가구의 소비지출수준을 보상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합리적인 보상수준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1인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물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4절에서 설명될 가족부양수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1인기준 보상금에 필요한 부가수당으로 지급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는 <표 4-9>에서처럼,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 소비지출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2008년 1분기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지출상태를 보면, 소득피크시점은 30대, 소비피크시점은 4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장해발생 연령에서 기대여명동안 연령별 소비지출을 고려해서 산출된 지출대비 보상금의 수익비는 <표 4-10>와 같다.

<표 4-9>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지출: 2008 1/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소 득	3,414.9	2,727.3	3,745.8	3,710.9	3,834.3	2,123.4
소비지출	1,952.9	1,724.8	2,054.6	2,115.1	2,098.5	1,412.3

주: 소비지출에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제외됨

우선 상이등급별 수익비를 보면 상이1급의 경우 90%이상, 2급 80%수준, 3급 75%수준, 4급 60%수준, 5급 50%수준, 6급 45%수준, 7급은 15%수준으로 등급간 분포가 고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급과 6급의 경우 '酊'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달리하고 있는데, 소비지출을 고려한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급과 3급간, 3급과 4급간 수익비의 경우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한편 7급의 경우에는 수익비가 불과 15%에 불과하여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미미함을 알 수 있어,

등급재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해발생 연령별 수익비를 보면, 30대 중반에 발생한 상이자의 급여수익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30대 후반부터 소비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며, 40대 중반에서 수익비가 높은 이유는 30대보다 소비지출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소비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발생 연령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중증이하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보상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4-10> 장해발생연령별 급여수익비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1급1항	1.02	1.00	1.01	0.98	1.04	1.01	1.13
1급2항	0.97	0.95	0.96	0.94	1.00	0.97	1.07
1급3항	0.93	0.91	0.92	0.90	0.95	0.93	1.03
2급	0.83	0.81	0.82	0.80	0.85	0.82	0.91
3급	0.77	0.76	0.77	0.74	0.79	0.77	0.85
4급	0.65	0.63	0.64	0.62	0.66	0.64	0.72
5급	0.54	0.53	0.53	0.52	0.55	0.53	0.59
6급1항	0.49	0.48	0.49	0.47	0.50	0.49	0.54
6급2항	0.45	0.44	0.45	0.44	0.46	0.45	0.50
7급	0.15	0.15	0.15	0.14	0.15	0.15	0.17

주: 급여수익비는 장해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급여대비 소비지출($\sum B_t / \sum C_t$)임.

나. 보상기준선의 개선방안

보훈급여금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보상수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보훈급여는 전국가계평균소비지출원액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상수준을 책정하고 있으나, 등급별 보상수준에 합리적인 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등급간 보상금액의 차이가 비체계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7급의 보상금은 월 27만5천원, 6급 2항은 월 82만 7천원을 지급받게 되어 1등급 차이에 55만 2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보훈급여의 성격을 확보하면서 적절한 보상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산출되는 소득, 소비지출 관련 통계 자료와 국내유사보상제도인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공무원 보수와의 비교를 통해 보훈급여 보상수준의 준거기준을 모색해본다.

1) 소비지출

상이보상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상체계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가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표 4-11>은 2007년 기준으로 산출된 각종 통계자료의 소비와 소득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7년 1인가구 소비지출은 856.2천원이고 평균가구(3.27명)의 소비지출은 2,211.6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선 보상체계가 장해율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등급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수당제도 또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면 기준선 설정은 소득보다는 소비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인 소비보다는 평균가구소비지출 수준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종신연금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상이자들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연령에 맞게 지출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는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이 타당하고, 인위적인 가구설정 보다는 평균가구원 추이변화에 맞게 보상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가구원들의 소득을 합산한 개념이어서 보상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표 4-11> 국내 소비, 소득관련 통계(2007)

(단위: 천원)

구 분	가구소비지출		가구소득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가구소득
	1인가구	평균가구	1인가구	평균급여	평균보수	전가입자	1인가구
보상기준	856	2,212	1,303	1,165	2,161	1,679	1,303

자료: 통계청, 각 주요통계자료

주 : 가구소비와 소득은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전국 9000 표본가구결과임. 국민연금 평균 소득은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임, 사업장가입자는 5인이상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임. 공무원연금가입자의 보수월액임.

2) 소득기준

보훈보상체계가 종신연금 방식이라면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상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보상체계의 개편방안이 전술한 바와 같이 경(輕)상이자에게 일시금을 도입한다면 소비지출보다는 소득이 기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득능력을 고려한 보상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호프만방식이나 라이프니쓰방식은 개인의 소득능력과 노동생명표를 고려하여 사고시점부터 기대여명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신보상체계가 장해율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이 산출되고, 일정 장해율 이하자에게 상이일시금을 주는 것으로 한다면, 소비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기준은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일반인의 경우 사고시점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고 급여수준이 얼마인가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향후의 소득패턴을 가정할 수 있지만,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적어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상이자를 포함한 모든 상이자의

보상기준을 위한 대안변수(proxy variable)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표 4-11>에서 제시된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현행 보상체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실시될 신보상체계에서 적절한 기준을 모색해본다.

가) 산재보험급여 기준 적용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수준이어야 함으로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수준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급여 산정방식을 사용하되 어느 정도의 가산액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고려한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산재보상의 수준보다 약 5%정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훈대상자 중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20대 군인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때 군인의 평균임금은 보훈급여의 기준으로 선정하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이며, 적정한 근로 직종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근로자의 상해보상과는 차별을 두기 위하여 영국의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평균임금과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액에 장해율을 곱하여 장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둔다. 2008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일일 약 8만5천원이며 이 금액은 장해율 100%일 때 적용되는 것이다.

$$\begin{aligned} \text{평균임금액} &= \text{전체근로자 평균임금} \times \text{장해율} \\ \text{보훈급여액(월)} &= (\text{평균임금} \times \text{장해일수} \times 1.05) / 12 \end{aligned}$$

예를 들면, 장해율 50%의 보훈급여대상자일 경우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42,500 = 85,000(\text{전체근로자 평균임금}) \times 0.5(\text{장해율})$$

$$1,223,468 = (42,500(\text{평균임금}) \times 329\text{일} \times 1.05(5\% \text{가산})) / 1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훈급여액을 선정할 때 예상되는 급여수준과 현행 급여수준을 비교해보면 <표 4-12>와 같다.

<표 4-12> 산재급여수준 적용 시 예상 보훈급여

장해율	신보상금 (산재수준의 5% 가산)	현행 등급	현행보훈급여 보상금
100%	2,446,937원	1급 1항	1,864,000원
90%	2,202,243원	1급 2항	1,778,000원
80%	1,957,549원	1급 3항	1,704,000원
70%	1,712,855원	2급	1,512,000원
60%	1,468,162원	3급	1,413,000원
50%	1,223,468원	4급	1,185,000원
40%	978,774원	5급	982,000원
30%	734,081원	6급 1항	896,000원
20%	489,387원	6급 2항	827,000원
10%	244,693원	7급	275,000원

우선 중상이자의 경우에는 현행 급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보상기준변경에 따른 반발을 줄일 수 있으나, 하위등급은 현행 급여를 기준으로 새로운 장해율을 찾아가는 방안과 현행 등급을 등급 간에 일정한 비율 조정함으로써 등급 간의 비체계적인 급여수준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규 진입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남는다. 동일한 상이를 입었음에도 구보상체계의 상이자들이 기존의 보상 수준을 유지 받는 기득권으로 신보상체계 신규보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보상체계의 신규보상자와는 다른 장해율표에 의해 보상수준이 결정되도록 하고 일정 등급이하는 일시금

으로 주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상금에 간호수당 및 여러 가지 수당이 가산 될 경우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짐으로 산재급여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당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나) 공무원 평균보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상이연금의 기준을 중간급 공무원 봉급의 91%로 책정하고 있으며, 연금 인상은 공무원의 봉급과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연동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익년도 물가, GDP, 재정사정 전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민간부문 임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을 보훈급여액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장해율에 따라 등급간 비례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초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되며, 2008년도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은 2,202,274원이다.

<표 4-13> 공무원 평균보수월액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장해율	신보상금	현행등급	현행보훈급여 보상금
100%	2,202,274원	1급 1항	1,864,000원
90%	1,982,047원	1급 2항	1,778,000원
80%	1,761,819원	1급 3항	1,704,000원
70%	1,541,592원	2급	1,512,000원
60%	1,321,364원	3급	1,413,000원
50%	1,101,137원	4급	1,185,000원
40%	880,909원	5급	982,000원
30%	660,682원	6급 1항	896,000원
20%	440,454원	6급 2항	827,000원
10%	220,227원	7급	275,000원

공무원 보수수준에 연동함으로써 일반국민 중간계층의 생활수준보장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공공부문의 공무원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보상금 인상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장해율 70% 이상은 기준보다 높으며 60%부터는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어 중상자들에게 중간계층 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기준보다 높은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어 급여체계의 합리성이 보장된다.

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적용

국민연금급여의 산식에 적용되는 A값은 연금수급 개시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 값이다. A값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알 수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A값은 1,678,837원이며 매년 변동되게 된다. 보훈급여의 기준을 국민연금의 A값으로 설정하고 장해율에 따라서 보상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4> 국민연금 A값 수준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장해율	신보상금	현행등급	현행보훈급여 보상금
100%	1,678,837원	1급 1항	1,864,000원
90%	1,510,953원	1급 2항	1,778,000원
80%	1,343,070원	1급 3항	1,704,000원
70%	1,175,186원	2급	1,512,000원
60%	1,007,302원	3급	1,413,000원
50%	839,418원	4급	1,185,000원
40%	671,534원	5급	982,000원
30%	503,651원	6급 1항	896,000원
20%	335,767원	6급 2항	827,000원
10%	167,883원	7급	275,000원

국민연금의 A값은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신규수급자들의 연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년도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과거 3년간 평균소득의 평균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우보다 낮을 가능성이 많다. 그 결과 전체적인 보상금 수준이 낮아져 대상자의 반발이 우려 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모든 근로자 및 자영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상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라) 가구소득

현행보훈급여금의 보상금 기준은 가계조사결과 나타난 3인가구의 소비지출중 보훈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비와 교육비를 제외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사회적인 환경변화로 점차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고 머지않아 평균가구원수가 2.5명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보상체계가 장해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면, 1인 소득을 중심으로 보상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중상이자들의 경우에 장해율에 따라 정비례하는 보상체계는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주기 영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중상이자를 위한 특별부가연금제를 두고 있다. 물론 미국 등처럼 기본보상금체계가 중상이정도와 가족수당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면 현행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보상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해율에 비례하는 보상체계가 바람직하고, 그 차액은 중상이 부가연금형태로 보전해 주어야한다. <표 4-15>은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적절히 표시해주고 있는데, 장해율 100%인 신보상금수준은 1,303천 원으로 현행 1급1항보다 56만 원 정도 낮다. 한편 장해 10%인 경우 13만 원, 30%인 경우 39만 원 수준으로 가능하면 장해 30%이하인 경우까지 일시금을, 장해 80%이상은 중상이 연금을 부가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제도와의 급여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가족부양수당제도를 도입해야한다.

<표 4-15> 1인 가구소득 적용시 예상 보훈급여

장해율	신보상금	현행등급	현행보훈급여 보상금
100%	1,303,000원	1급 1항	1,864,000원
90%	1,172,700원	1급 2항	1,778,000원
80%	1,042,400원	1급 3항	1,704,000원
70%	912,100원	2급	1,512,000원
60%	781,800원	3급	1,413,000원
50%	651,500원	4급	1,185,000원
40%	521,200원	5급	982,000원
30%	390,900원	6급 1항	896,000원
20%	260,600원	6급 2항	827,000원
10%	130,300원	7급	275,000원

이상에서 제시된 대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장해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조정하였으나, 현행 수준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장해율별로 보상수준을 비례하도록 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은 재정중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안중에서 1인 가구소득을 보상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을 최선의 안(I안)으로 보고, 비교적 합의도출이 쉬운 국민연금 급여의 기준이 되는 A값을 보상기준으로 하는 안(II안)을 차선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상이 일시금 및 중상이부가연금 도입, 수당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표 4-16>은 장해율별 보상수준과 장해율에 따른 일시금(30% 이하) 및 중상이부가연금(80% 이상) 수급자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율 30% 이상의 경우 가족부양수당을 도입하는 보훈급여금체계의 개편 방안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6> 장해율별 보상수준 비교

장해율	1인 가구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A	비고
100%	1,303,000원	1,678,837원	중상이연금 가족부양 수당
90%	1,172,700원	1,510,953원	
80%	1,042,400원	1,343,070원	
70%	912,100원	1,175,186원	
60%	781,800원	1,007,302원	
50%	651,500원	839,418원	
40%	521,200원	671,534원	
30%	390,900원	503,651원	
20%	260,600원	335,767원	
10%	130,300원	167,883원	일시금

제4절 수당제도 개선방안

1. 간호수당 개선

가. 국내 유사제도의 간호수당

1) 산재보험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의 경우, 간병급여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간병료 지급기준을 간호인력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08년 기준 간호사의 경우에는 64 천원이나, 가족 등 기타간병인의 경우에는 38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이 간병단가의 차등적용은 간병수당이 보상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간호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4-17> 산재보험의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2008)

구 분	금액(1일)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 · 기타 간병인	38,240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의 5번째 보험제도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도 실시와 동시에 요양보호사제도가 실시되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요양제도는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간에 상당하는 요양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등급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과 본인이 시설의 경우에는 80:20, 재가의 경우에는 85:15의 비율로 부담한다. 물론 등급별로 정해진 서비스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100% 본인부담이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표 4-18>에서처럼 1등급의 경우 1,097천원이고, 2,3등급은 각각 879천원, 76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 4-18>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097,000원	879,000원	760,000원

나. 간호수당제도 개선방안

현재의 단순한 간호수당지급 체제는 과거 간호 및 수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도입되고 운영되었던 만큼, 현재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환이 필요한 급여라 할 수 있다. 간호수당은 무엇보다도 간병수당과 장기요양수당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병수당은 가족이 요양급여 수급 기간 동안 돌보는 경우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서비스 체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간병보호를 위한 수당제도는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간병인력을 통하여 간병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병원여건상 간병서비스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간병급여를 기존의 현금급여 방식에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하여 체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이보상금체계가 장해율을 기준으로 개편된다면, 기본보상금은 1인 가구소득(I)이나 일반근로자나 자영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평균소득(A)를 근거로 다음의 <표4-19>처럼 산출될 수 있다. 또한 신구제도간의 급여격차해소를 위해 현행 1급1항의 총보상금(=보상금+간호수당)을 100% 장해율 급여로 간주한다면 신제도하에서

상이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4-19> 신보상체계에 따른 상이보상금

(단위: 천원)

장해율	1인가구 소득 (I안)	국민연금 평균소득(A) (II안)	현행1급1항 =100% (III안)	간호수당 (N)	중상이 수당 (W)	보상수준		
						I안	II안	III안
100%	1,303	1,679	1,864	1,097	766	3,166	3,542	3,727
90.0%	1,173	1,511	1,678	987	689	2,849	3,188	3,354
80.0%	1,042	1,343	1,491	878	613	2,533	2,833	2,982
70.0%	912	1,175	1,305	768	-	1,680	1,943	2,073
60.0%	782	1,007	1,118	658	-	1,440	1,666	1,777
50.0%	652	839	932	549	-	1,200	1,388	1,481
40.0%	521	672	746	-	-	521	672	746
30.0%	391	504	559	-	-	391	504	559
20.0%	261	336	373	-	-	261	336	373
10.0%	130	168	186	-	-	130	168	186

2. 가족부양수당 도입

가. 국내 유사제도의 가족부양수당제도

보훈급여금제도와는 달리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가족에 대한 수당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수당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도 유족급여에 한하여 가족수당의 성격의 급여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비록 급여 수준은 매우 낮지만 가족수당의 개념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가장 늦게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 있어서 가족 또는 유족을 피부양자 개념에 포함하여 보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에 있어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친인척을 의미한다. 즉, 가입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부모와 장인·장모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을 포함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 차이는 사회보험의 보장목적에 의하여 경제적 부양을 받고 있는 자로 대상을 확대 해석함으로서 노후보장과 부양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⁶⁾

그러나 종합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가족으로서 피부양자와 유족 관련된 규정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국민연금 내에서 각각의 급여에 따라 보장의 단위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달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와 관련하여 가족 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장해·유족연금에서는 가급연금을 통해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반영하여 가족수당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연금급여에 추가하여 가족수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수에 따른 지출을 고려해서 보장수준을 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국민연금에서 유족의 범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 손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를 포함한다.

유족연금은 그 성격상 국민연금제도에 반영된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급여이다. 우리나라의 유족연금은 급여 수급 단위를 선진국처럼 개인별로 배우자 연금, 자녀연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급자를 가족단위로 하고 수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족연금의 수급자 우선순위는 유족연금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분할연금의 경우 노령·장해·유족연금과는 다른 가족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각각의 연금급여 간 가족개념이 일치하기도 하고 불일치하기도 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0>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가족개념과 반영형태, 반영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20>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체계

	가족개념	반영형태	반영방식
노령연금	반영함	가족수당	가급연금
유족연금	반영함	유족범위, 가족수당	우선순위, 가급연금
장해연금	반영함	가족수당	가급연금
분할연금 등 기타	반영하지 않음	-	가급연금

자료: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2007

나. 외국의 보훈가족수당제도

미국의 경우, 장해율이 30% 이상인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율과 제대군인의 개별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부양가족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중인 23세 미만자녀,

그리고 개호수당 수급중인 배우자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표 4-21> 장해율별 보상금 및 가족부양수당

(단위: 미 \$)

장해율	본인		배우자		한부모		자녀		18세이하 추가자녀당		18세이상 재학중자녀		A/A 배우자 추가	
	기본 보상	차이	수당	차이	수당	차이	수당	차이	수당	차이	수당	차이	수당	차이
30%	376	-	45	-	36	-	32	-	22	-	72	-	40	-
40%	541	165	60	15	48	12	43	11	30	8	96	24	54	14
50%	770	229	75	15	60	12	54	11	37	7	120	24	68	14
60%	974	204	90	15	72	12	65	11	45	8	144	24	81	13
70%	1,228	254	105	15	84	12	76	11	52	7	168	24	95	14
80%	1,427	199	120	15	96	12	87	11	60	8	192	24	108	13
90%	1,604	177	135	15	108	12	98	11	67	7	216	24	122	14
100%	2,673	1,069	150	15	120	12	109	11	75	8	240	24	136	14

주: A/A는 개호수당임.

<표 4-21>는 2008년 장해율별 기본보상금과 가족수당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해율과 부양가족에 따라 보상금 수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해율이 높으면 기본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해율 10%간격에 따른 가족수당수준은 기본보상금과는 달리 등간격임을 알 수 있다. 즉, 장해율 10%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는 \$15, 한부모 \$12, 자녀 \$11, 18세이하 자녀 \$7-8, 18세이상 학업자녀 \$24, 개호수당수급 배우자 \$13-14 씩 증가한다.

한편 영국의 전쟁연금의 경우, 제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보상금은 장해율에 따라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족수당은 장해율과는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 가족부양수당제도 도입

가족구성원을 배우자, 18세 미만인 자녀, 부모로 구분하여 가족부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에게 고령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자녀인 경우, 대학 재학중인 경우에는 23세까지 가능하고, 장해인인 경우에는 연령과는 무관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현행 수당제도중 가족수당제도로 통합 가능한 것은 「예우법시행령」 상의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등이 가족부양수당의 개념으로 통합가능하며, 「예우법시행령」 상의 '독자사망수당'과 '2인 이상 사망자수당'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한편 전상수당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이보상의 경우, 60세를 기준으로 94천원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본인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수당'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7급에만 존재하는 60세 이상 무의탁인 경우는 266천원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시행으로 제도권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수당'으로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수당 수급대상자는 향후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 비율이 52%(전체 국민은 9.7%)에 달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지수를 보면 2013년 이후에는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2> 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고령수당	가.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60세 이상인 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94 147 94
무의탁수당	가.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1) 5급 2) 6급1항 3) 6급2항 및 7급 4) 재일학도의용군인 나.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배우자 1)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2) 55세 이상 또는 장해인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다.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부모 또는 조부모 1)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 2)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편모 또는 55세 미만의 장해인인 편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266
무의탁부모 부양수당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에 한한다)을 부양하는 자	147
독자사망 수당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부모로서 자녀가 전사·순직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자	266
2명 이상 사망 수당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 사망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명인 경우 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26만 6천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266
.전상수당	• 해당하는 자 중 전상군경	18

미성년 자녀(제매) 양육수당	가.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배우자로서 1) 미성년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지급액에서 추가 되는 1명당 18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180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자녀로서 1) 미성년제매가 2명인 경우 2) 미성년제매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지급액에서 추가 되는 1명당 36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360

<표 4-23>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지수(=65세이상/전체대상자)

(단위: 명, %)

연도	전체	65세이상	연도	전체	65세이상
2010	805,475	70.1%	2017	741,523	82.3%
2011	799,907	74.1%	2018	730,637	81.6%
2012	791,909	78.4%	2019	719,838	81.0%
2013	782,778	81.1%	2020	709,072	80.3%
2014	773,048	82.8%	2021	698,578	79.7%
2015	762,716	83.0%	2022	688,091	79.1%
2016	752,274	82.8%	2023	677,662	78.6%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3. 생활조정수당의 개선

가. 생활지원수당의 도입

모든 보훈대상 가구는 가칭 '국가보훈선'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보훈선은 최저생계비 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된다. 이 같은 취지는 형식적인 생활조정수당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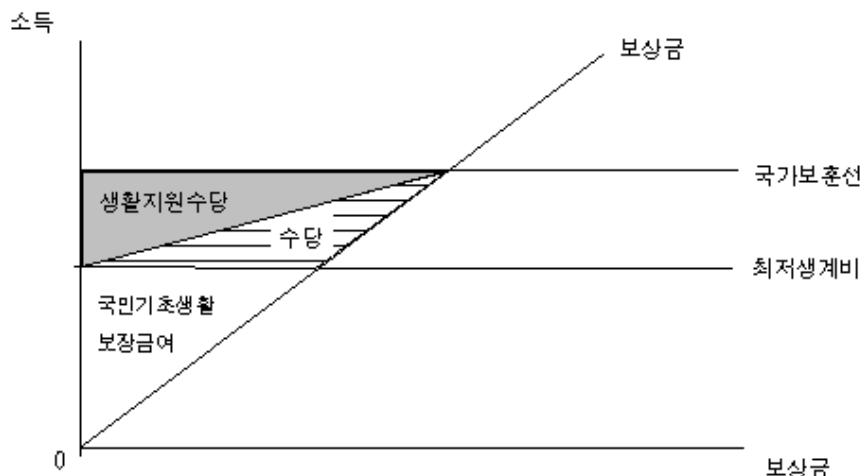
따라서 모든 보훈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금을 수급하지 않는 참전용사자 등에 대한 노후생활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된다. 생활지원수당은 보훈대상자가 상기의 모든 급여와 소득을 합하여 '국가보훈선'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표 4-24>는 가상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배(이른바 차상위선), 1.5배를 제시한 것이다. 현행 생활조정수당의 기준선을 도시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최저생계비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 4-24> 국가보훈선(예)

	최저생계비(A)	국가보훈선(=A*1.2)	국가보훈선(=A*1.5)
1인	463,047	555,656	694,571
2인	784,319	941,183	1,176,479
3인	1,026,603	1,231,924	1,539,905
4인	1,265,848	1,519,018	1,898,772
5인	1,487,878	1,785,454	2,231,817
6인	1,712,186	2,054,623	2,568,279

<그림 4-2> 국가보훈선과 생활지원수당



4. 보훈수당제도의 개편(안)

수당제도의 개혁은 전체 보훈급여금체제에서 볼 때는 재정중립적 성격의 개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정절감이나 부담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 하게 되겠지만, 각 수급자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각각의 수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편계획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3> 수당 개편(안)

<현행제도>		<개편안>
예우법	간호수당	- 중상이수당에 일부 포함 - 간호수당은 요양서비스수가를 고려함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수당 (유족일시금 지급)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현행유지
개별법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현행유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현행유지
	참전명예수당	+ 생활지원수당
예우법시행령	고령수당	65세 이상만/ 부양가족수당포함
	무의탁수당	65세 이상만/ 부양가족수당포함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유족일시금 지급)
	2인 이상 사망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부양가족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폐지
전상수당		

즉, 각각의 수당 중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회적 성격의 수당은 제도 개혁과 함께 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일화된 수당 제도에서 충분히 대체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이다. 우선 사망으로 이유로 받는 수당인 6·25자녀수당, 독자사망수당 및 2인 이상 사망수당은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미성년자녀 양육수당이나 미성년제매양육수당은 가족수당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등도 가족수당으로 전환되는 점에서 제도개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령수당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무의탁수당 등은 가족부양수당으로 통합한다.

수당제도 조정 및 개선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급여수급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액의 변화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정수준까지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여 급여 삭감에 대한 변화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는 충격 완화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한 수당체계로 인하여 높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고상한선을 마련하여 그 이상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일시금제도 도입

1. 보상금재정추계

가. 보훈대상자 추이

향후 보훈대상자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5>는 보훈대상자 추이와 보상금수급 대상자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보훈대상자는 2010년 약 81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이후에는 70만 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상금을 수급하는 보훈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상이자와 자녀·부모 등의 유족보상 수급자가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이보상의 경우 1~6급 대상자는 6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7급의 경우에는 2010년 6만 명에서 2020년 이후에는 약 2배인 12만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족보상 대상자도 고령현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20110년 약 6만에서 2020년 이후에는 8만 명으로, 자녀 및 부모의 경우에는 약 6만에서 10년 후에는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상이 7급과 자녀 및 부모 등의 보상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훈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전시가 아닌 평상시 상이발생 위험률은 경증의 젊은 군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긴 수급자들이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나. 보상금 소요재정 추계

현행 방식의 보상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대상자추이와 2008년 보상금수준을 고려하여 추계된 보상금 재정추이 <표 4-26>과 같다.

<표 4-25> 보상금 수급자 추이

	전체	상이보상			유족		
		소계	1-6급	7급	소계	배우자	자녀부모등
2010	806,817	123,576	61,841	61,735	117,010	58,641	58,369
2011	800,015	129,458	62,164	67,294	121,225	60,694	60,531
2012	790,831	134,963	62,337	72,626	125,868	62,963	62,905
2013	780,741	140,531	62,634	77,897	130,637	65,119	65,518
2014	770,268	145,963	62,936	83,027	135,697	67,313	68,384
2015	759,643	151,264	63,246	88,018	141,025	69,500	71,525
2016	749,072	156,469	63,588	92,881	146,643	71,663	74,980
2017	738,544	161,570	63,958	97,612	152,481	73,757	78,724
2018	728,030	166,590	64,338	102,252	158,536	75,752	82,784
2019	717,607	171,600	64,788	106,812	164,768	77,598	87,170
2020	707,232	176,597	65,276	111,321	171,106	79,257	91,849
2021	696,920	181,600	65,796	115,804	177,512	80,681	96,831
2022	686,537	186,647	66,369	120,278	183,976	81,870	102,106
2023	676,073	191,728	66,984	124,744	190,412	82,809	107,603
2024	665,694	196,847	67,653	129,194	196,714	83,452	113,262

7) 전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감안할 때 향후 전·공상군인 중 경상이자 의 비율이 다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2007년 신규 등록자 중 7급 경상이자는 약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5> 보상금 수급자 추이-(계속)

	전체	상이보상			유족		
		소계	1-6급	7급	소계	배우자	자녀부모등
증가율							
2010	-0.5%	5.1%	0.5%	10.2%	3.5%	3.5%	3.5%
2011	-0.8%	4.8%	0.5%	9.0%	3.6%	3.5%	3.7%
2012	-1.1%	4.3%	0.3%	7.9%	3.8%	3.7%	3.9%
2013	-1.3%	4.1%	0.5%	7.3%	3.8%	3.4%	4.2%
2014	-1.3%	3.9%	0.5%	6.6%	3.9%	3.4%	4.4%
2015	-1.4%	3.6%	0.5%	6.0%	3.9%	3.2%	4.6%
2016	-1.4%	3.4%	0.5%	5.5%	4.0%	3.1%	4.8%
2017	-1.4%	3.3%	0.6%	5.1%	4.0%	2.9%	5.0%
2018	-1.4%	3.1%	0.6%	4.8%	4.0%	2.7%	5.2%
2019	-1.4%	3.0%	0.7%	4.5%	3.9%	2.4%	5.3%
2020	-1.4%	2.9%	0.8%	4.2%	3.8%	2.1%	5.4%
2021	-1.5%	2.8%	0.8%	4.0%	3.7%	1.8%	5.4%
2022	-1.5%	2.8%	0.9%	3.9%	3.6%	1.5%	5.4%
2023	-1.5%	2.7%	0.9%	3.7%	3.5%	1.1%	5.4%
2024	-1.5%	2.7%	1.0%	3.6%	3.3%	0.8%	5.3%

우선 보상금에서 소요되는 전체 재정은 2조 4천억 원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상 내용별로 보면 상이보상의 경우 1~6급에는 8천억원 수준이 소요되지만 경상이자인 7급의 경우에는 2010년 2,518억원에서 2024년은 약 2배인 5,0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천억원 내외에서, 자녀·부모 등의 경우에는 2010년 2천억 원에서 점차 감소하게 되어 2020년후에는 1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4-26> 보상금추계

(단위: 억원)

	보상금	상이보상			유족보상		
		전체	소계	1급~6급	7급	소계	배우자
2010	24,048	10,680	8,162	2,518	7,871	5,722	2,149
2011	24,403	10,913	8,180	2,733	7,933	5,817	2,115
2012	24,669	11,115	8,177	2,937	7,989	5,910	2,080
2013	24,832	11,328	8,191	3,137	8,025	5,982	2,042
2014	24,920	11,536	8,206	3,330	8,046	6,043	2,003
2015	24,926	11,739	8,222	3,517	8,053	6,089	1,964
2016	24,902	11,941	8,243	3,698	8,048	6,123	1,925
2017	24,851	12,143	8,269	3,874	8,025	6,139	1,886
2018	24,778	12,344	8,297	4,046	7,988	6,140	1,848
2019	24,692	12,551	8,336	4,215	7,934	6,124	1,810
2020	24,587	12,762	8,380	4,382	7,863	6,091	1,773
2021	24,463	12,975	8,427	4,547	7,774	6,038	1,736
2022	24,325	13,193	8,481	4,712	7,670	5,971	1,699
2023	24,174	13,416	8,540	4,876	7,554	5,891	1,663
2024	24,006	13,649	8,608	5,040	7,415	5,794	1,621
증가율							
2010	1.8%	2.3%	0.2%	9.8%	0.9%	1.8%	-1.2%
2011	1.5%	2.2%	0.2%	8.5%	0.8%	1.7%	-1.6%
2012	1.1%	1.8%	0.0%	7.5%	0.7%	1.6%	-1.7%
2013	0.7%	1.9%	0.2%	6.8%	0.4%	1.2%	-1.8%
2014	0.4%	1.8%	0.2%	6.2%	0.3%	1.0%	-1.9%
2015	0.0%	1.8%	0.2%	5.6%	0.1%	0.8%	-2.0%
2016	-0.1%	1.7%	0.3%	5.1%	-0.1%	0.5%	-2.0%
2017	-0.2%	1.7%	0.3%	4.8%	-0.3%	0.3%	-2.0%
2018	-0.3%	1.7%	0.3%	4.4%	-0.5%	0.0%	-2.0%
2019	-0.3%	1.7%	0.5%	4.2%	-0.7%	-0.3%	-2.0%
2020	-0.4%	1.7%	0.5%	4.0%	-0.9%	-0.5%	-2.1%
2021	-0.5%	1.7%	0.6%	3.8%	-1.1%	-0.9%	-2.1%
2022	-0.6%	1.7%	0.6%	3.6%	-1.3%	-1.1%	-2.1%
2023	-0.6%	1.7%	0.7%	3.5%	-1.5%	-1.3%	-2.1%
2024	-0.7%	1.7%	0.8%	3.4%	-1.8%	-1.6%	-2.5%

2. 일시금제도 도입 효과

가. 상이연금 일시금제도의 도입

1) 적용방법

2010년부터 신규 발생하는 상이7급인 경상이자경우, 상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보상금은 현재와 같이 275천원이고, 수급기간은 상이시점부터 사회보장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55세부터수급)까지를 노동가능기간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55세 이전에 상이가 발생한 경우, 중간이자공제를 위해 호프만계수 또는 라이프니쓰계수 (이하 ‘호프만계수등’)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55세 이상 신규상이자는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같은 이유는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을 연금액의 약 4.5배로 설정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배상을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취업가능기간을 연령에 상관없이 5년으로 하는 안과 절충안으로 일부연령구간에서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쓰계수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2) 일시금 소요재정 추계

일시금 제도 도입 시 사고의 보상과 관련하여, 장래의 소득을 장해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그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의 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가) 호프만 또는 라이프니쓰 방식

일시금 제도 도입 시 사고의 보상과 관련하여, 장래의 소득을 장해시점 을 기준으로 일시적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그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의 공제가 필요하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하는데, 실제 이를 일일이 계산하기가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미리 이자를 공제해둔 수치를 호프만계수 또는 라이프니찌 계수라한다. 호프만계수는 단리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치이고, 라이프니찌 계수는 복리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치이며, 여기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년 5%이다.

이 같은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에서 호프만식에 의할 경우 보상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쓰 수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법원은 호프만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할 때, 월단위의 경우 호프만지수가 240을 넘더라도 240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 최고 호프만 지수를 240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는 1년에 5%의 이자가 붙으면 20년, 즉 240개월이 지나면 100% 이자가 붙어 240개월이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호프만 치수의 최고를 240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연단위의 하는 경우에도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수치표가 20일 때는 이를 최고치로 한다.⁸⁾

또한 본 모형에서는 수급기간의 하한선으로 5년으로 정한다. 이는 고령

8) 호프만 계수 240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59 판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 1009 판결에 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 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되는 손해액보다 많게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위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근로가능연수를 연장 인정해줌으로서 일시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표 4-27> 일시금산정을 위한 취업가능년수별 지불계수

연령	취업가능년수	호프만식	라이프니쓰식	연령	취업가능년수	호프만식	라이프니쓰식
21	39	21.308	17.015	41	19	13.115	12.085
22	38	20.969	16.866	42	18	12.602	11.689
23	37	20.624	16.710	43	17	12.076	11.273
24	36	20.273	16.545	44	16	11.536	10.837
25	35	19.916	16.373	45	15	10.980	10.379
26	34	19.552	16.191	46	14	10.409	9.898
27	33	19.182	16.001	47	13	9.821	9.393
28	32	18.805	15.801	48	12	9.215	8.863
29	31	18.420	15.591	49	11	8.590	8.306
30	30	18.028	15.371	50	10	7.944	7.721
31	29	17.628	15.140	51	9	7.278	7.108
32	28	17.220	14.897	52	8	6.588	6.463
33	27	16.803	14.642	53	7	5.874	5.786
34	26	16.378	14.374	54	6	5.133	5.076
35	25	15.943	14.093	55	5	5	5
36	24	15.499	13.798	60	5	5	5
37	23	15.044	13.488	65	5	5	5
38	22	14.579	13.162	70	5	5	5
39	21	14.103	12.820	80	5	5	5
40	20	13.615	12.461	90	5	5	5

주: 55세 이상 신규상이자의 경우 취업가능연수 5년으로 가정
법정이자율은 년 5%로 가정

나) 일정기간 수급방식

호프만, 라이프니쓰 식은 현재 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사망 시까지 잔여근로가능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상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잔존근로기간이 많을수록 보상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일시금 지급대상을 경상이자로 제한한다면, 젊은 상이자의 보상일시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금의 일정배수 - 약 4.5배를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다소 높은 연령에 구분 없이 5년간 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일시금 소요재정을 파악해서 비교해 본다.

다) 절충방식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호프만계수 등의 사용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사회보험 등의 장해보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목적이 개인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위험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해보상은 보상기준에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지나치게 일시금수준이 많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일시금 지급년수가 5년 이상이 되도록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부언하면 <표 4-27>에 제시된 호프만계수의 1/2이 5보다 작아지는 연령인 47세부터는 5년분의 상이일시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상이일시금 추계결과

추계결과 신규7급 상이자는 매년 7,500명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이 되면 8,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계를 위해 전술한 바처럼 현행 상이7급 보상금인 월 275천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호프만방식과 라이프니츠 방식은 매년 20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모든 7급상이자에게 5년분의 일시금을 지급한다면 1400억 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47세까지는 조정계수(호프만계수 1/2적용)를 47세 이후 연령은 5년분의 일시금을 받는다고 하면 1500억 수준의 일시금재원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 제2안이 재정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28> 대안별 상이일시금 소요재정 추계

(단위: 명, 억원)

	신규7급상이자	호프만식(H)	라이프니쓰식	5년일시금	조정계수적용 (H)*1/2
2010	7,105	2,261	2,069	1,226	1,504
2011	7,216	2,284	2,094	1,244	1,519
2012	7,322	2,302	2,117	1,261	1,532
2013	7,432	2,316	2,136	1,278	1,543
2014	7,538	2,328	2,153	1,294	1,552
2015	7,640	2,338	2,169	1,311	1,561
2016	7,745	2,344	2,181	1,327	1,568
2017	7,843	2,345	2,190	1,343	1,573
2018	7,945	2,346	2,198	1,358	1,577
2019	8,041	2,341	2,200	1,374	1,580
2020	8,139	2,333	2,201	1,389	1,581
2021	8,232	2,323	2,198	1,404	1,582
2022	8,327	2,309	2,192	1,419	1,581
2023	8,418	2,290	2,182	1,434	1,579
2024	8,511	2,268	2,169	1,448	1,576

다. 일시금제도 도입의 한계

1) 제도도입의 장·단점

일시금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에게 노동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립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수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시금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경상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합리적 개인은 생애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가능기간동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연금에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을 극대화한다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 등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성이 있다. 왜냐하면 종전처럼 연금형태로 받는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혜택 - 생계 및 보건의료, 교육비 문제 등 - 들에 대한 요구가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는 사전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보훈급여금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장해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상이자를 위한 재활사업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표 4-29> 상이일시금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비고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 활용 가능 · 긴급 생활자금 활용 가능 - 주택구입, 결혼자금 등을 자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금 활용 후, 생계대책 불확실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금 수급자의 보상금외의 서비스(교육, 의료등)지원 여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이 수급자 감소로 인한 장기적으로는 보상금재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일시금재원확보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2) 직업재활 서비스강화

경상이자를 대상으로 일시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상이군경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의료

재활에 역점을 두어왔다. 일반적으로 재활서비스는 개인의 사회복귀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생산성 기능의 확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재활서비스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서비스의 도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그동안 재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사회보장관련 제도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재정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서 재활의 중요성을 사회보장의 생산성 기능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장해로 인한 급여수급자가 스스로 노동시장에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인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재활서비스는 그동안 장해인고용촉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2007년 노사정합의 이후 산재근로자로서 장해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본격화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장해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로 구분하여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훈급여금제도에서는 기존의 요양급여를 통하여 의료재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재활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서비스 수요의 다변화 그리고 보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활서비스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성격을 보였으나 사회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욕구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의식 향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재활에 있어서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재활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활서비스의 환경에 적합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성과 서비스 형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재활은 재활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순한 형태였으나, 수급자의 욕구 다양성과 함께 공급자의 다양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 방식 역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단순한 시설 중심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단위 비용지원으로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관리운용업무가 증대됨을 의미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다양성은 재활에 있어서 자원관리, 조정, 기획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활을 지원함에 있어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의 확보는 재활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결정요인이 된다. 더구나 공급주체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불만과 불편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운영 자체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재활의 경우 의료재활의 경우 의료시설을 통한 적극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재활의 경우에는 실제 현재의 보훈 체제로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욕구와 공급 형태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국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은 실제 불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간 격차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입 단계에서는 외부에 위임하는 outsourcing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 보훈급여금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 보상체계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이루어야 한다. 첫째, 보상수준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 유공자의 공헌도 및 개인적 희생의 크기와 이에 대한 보상의 크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훈대상자들이 지역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들에게 ‘명예시민’등의 자격이 주어지고 지역사회의 행사 등에서 의전 상 특별히 예우하는 등의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셋째, 보상수준은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이상으로 보장하여 품위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은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적 기대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여건의 차이까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정부재정의 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현행 보상수준과 정부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보훈급여금체계의 개편 방안

보훈급여금제도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보상관련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만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한국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계층간 세대간 그리고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훈제도의 초기 사회적응성은 사회변화를 통한 다양성에 따라 과거의 통일적이고 일원화된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보훈보상체계는 언제 부턴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훈급여체계의 개편방안은 무엇보다도 ‘희생과 공헌’의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체계, 수당체계 및 사망일시금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보훈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에 있어서 문제 또는 한계로 지적되는 것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제도가 과거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는 부합되었을 수 있으나, 변화된 시대 환경에는 타당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해등급 판정 및 등급 간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점이나, 수당체계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보훈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제도와 부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변화에 의한 위험(risk of change)으로 최

근 장해등급에 있어서 7급의 신설로 인하여 평시상태에서 수급자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보장 측면에서 합리성의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그동안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재활급여의 도입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재활급여의 필요성은 보훈제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해율에 근거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보훈보상 관련 장해등급 판정체계는 매우 육체적 기능에 국한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에 따른 소득감소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

한편 급여방식의 문제로 장해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에 이르기 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새로이 추가된 7등급의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정책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급에 대한 연금액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경증등급에 대한 판단이 7급 수준의 경우,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의 보훈적 명예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히려 바람직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평시의 군복부 등으로 발생하는 7급은 수급 개시 연령이 매우 낮아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상금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미흡한 경우에 생계비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당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희생과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보상 이후에도 대상자의 필요에 미흡한 부분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현행의 연금지급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지불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연금지급자의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미만을 대상자로 하여 지급된다. 따라서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의 급여 중 보충적인 급여의 성격이 있다. 즉 보훈급여금과 각종수당, 그리고 보호조치를 통하여 최저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생활조정수당이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즉 국가유공자법상의 급여, 본인의 소득을 모두 투입한 경우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의 사회소득 및 근로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는 대상자의 필요시에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보훈관련 급여체제에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당제도라 할 수 있다. 보훈급여체제에서 수당제도는 과거 나름대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급여체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나 제도의 현실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단계에서 제도 자체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규정은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함에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 계층의 반발이나 또한 새로운 욕구의 반영 과정에서 기존의 수당제도와 충돌 등 이를 철회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 규정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변화로 인한 급여 지급은 왜곡될 소지가 많으며 복잡한 규정은 현황 파악이나 실직적인 보장 기능을 분석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등 부작용적 요소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발전된 제도 체계나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볼 때 수당제도는 간단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수당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보훈 관련 각종 수당은 15종류에 25개의 급여형태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수당제도가 기본급여에 추가하여 중증장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고려하고 있는 점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당종류 중에서 그 성격이 장해정도나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것 보다는 보훈의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그대로 살려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 관련 수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최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간호수당은 현행유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타 사회보장제도 특히 간호수당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서비스 체계의 환경이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 기존의 체제에 포함되어 있던 고령수당을 비롯한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등은 모두 가족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퇴원한 이후의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차원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사회보험급여로 지급되게 됨에 따라 보훈급여금제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간호수당을 수급하는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를 수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제도에서 간호수당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중복수급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보장에 있어서 적절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 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훈급여금제도에서 부담함으로써 시설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보훈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일반수급자와는 달리 절반에 해당되는 7.5%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가서비스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시설서비스의 부담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설서비스와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은 장해율에 근거한 보상체계 구축, 개인중심의 적정보장 기준선 설정 및 가족부양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기 3개 안은 폐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제도의 개혁이 한가지만으로 가능하다면 아주 단순한 사회일 것이다. 특히 기존 제도와 관련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고려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건의 하기로 한다.

우선,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통일된 장해율 판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부모 부양, 은퇴, 노후 등에 따라 가족상황이 바뀌고 지출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개인중심의 보상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족을 고려한 수당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상이자를 고려한 수당체계가 부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장석승·김현기,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국가보훈논총』, 창간호, 한국보훈학회, 2003.
- 국가보훈처, 『외국의 보훈제도(대만·호주)』, 2005.
- _____ 『외국의 보훈제도(독일·프랑스)』, 2005.
- _____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2005.
- _____ 『주요 국가의 보훈제도(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2000.
- _____ 2005(a). 『외국보훈제도종합비교연구: 미국·독일·프랑스·호주·대만편』, 국가보훈처.
- _____ 2007(b). 『국가보훈대상체계개편방안』, 국가보훈처.
- _____ 2005(b). 『보훈보상금체계개편방안』, 국가보훈처.
- _____ 2006. 『세계속의 보훈』, 국가보훈처.
- _____ 2007(a). 『국민보훈의식지수조사보고서』, 국가보훈처.
- _____ 2008. 『2008년도 보훈사업개요』, 국가보훈처.
- 권선흥,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보훈·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방향, 충성대연구소, 2004.
- 김규식, 「보훈세대 형성에 따른 실버타운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보훈학술논문집』, 제4회, 국가보훈처, 2002.
- 김근홍·이선형, 「고령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국가보훈논총』, 제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03.
- 김상균 외,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상자 분류체계 정립에

-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5권, 2004 가을.
- 김상균, 정이윤. 2004.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상자 분류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5권, pp. 5-34.
- 김승권, 김상철, 김유경, 김종성, 김용하, 이주연. 2007. 『한국의 국가보훈 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 「국가보훈 연금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2005.
- _____, “국가보훈연금체계의 개선방안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pp. 201-231, 2005.
- _____, “국가보훈체계 선진화방안모색”, 한국보훈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회의 발표논문, 2008.
- 김은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칭, 범위 및 보상의 우선순위 판단』, 총서 23, 보훈연수원, 1998.
- 김정우,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 방안』, 총서 17, 보훈연수원, 1997.
-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 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 _____, 《산재보험 보험급여 최고·최저보상한도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9.
- _____, 《OTS를 통한 산재보험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김진욱,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논총』, 제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03.
- 노동부. 1990-2008.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서울: 노동부,
- 문형표·김용하,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 한국개발연구원·국가보훈처, 2003.
- 문형표,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 한국개발연구원·국가보훈처, 2004.

- 박홍섭. 1996. “한독 산재보험제도의 비교검토와 우리 산재보험의 정책과 제”, 통일전후 산재보험과 재활체계에 관한 한·독 세미나, 서울: 근로복지공단.
- 베네딕스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옮김, 나남출판, 2002.
- 서울보훈병원. 2004. 『국내·외 장해평가제도 비교연구』, 서울보훈병원.
- 안기희,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한국보훈학회편, 흥의재, 2004.
- 오일환,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대응전략」, 국제보훈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_____, 「보훈보상의 현황과 개선책」,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한국보훈학회편, 흥의재, 2004.
- 유영옥, 「국가보훈의 역사성과 체계정립」, 한국보훈학회, 2006. 11.
- _____,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대상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2003.
- _____,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한국보훈학회편, 흥의재, 2004.
- 윤병섭,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향상 방안」,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발전방안 모색」, 국가보훈처·한국정책학회, 2002.
- 윤조덕 외. 1998. 《산재보험 요양 및 급여체계 선진화방안(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덕훈 외. 1997. 《21세기를 향한 생명보험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하전,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보훈학술논문집, 제5권, 국가보훈처, 2003.
-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연구, 제10

- 권 제4호, 2004.
- 정길호·문순영, 「국가유공자 보상수준 결정방법론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2.
- 정길호, 「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국제보훈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정진상, 「국가보훈의 경제학적 고찰」, 국가보훈논총, 창간호, 한국보훈학회, 2003.
- 한국개발연구원, 2003,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허만형, 「보훈보상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한국지역정보화 학회, 2003.

2. 국외문헌

- Achaz W., Grigg S.,(Hrsg.) AHVB 1993. *Erläuterung zu den Allgemeinen Haftpflichtversicherungsbedingungen*, Wien.
- Barry. Telford, "General Veterans Affairs Overview in Australia", 보훈국 제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Bramstäng G.; Joheman O. 1982.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Landesbericht Sweden*.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In: Schriftenreiche für Interna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d. 7, Berlin.
- Chang, Shu-jen, "General Veterans Affairs Overview in Taiwan", 보훈국 제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Dieter Farny. 1989. *Versicherungsbetriebslehre*, Karlsruhe.

- Gahlen B.; Hesse H.; Ramser H. J., (Hrsg.) 1990. *Theorie und Politik der Sozialversicherung*, Tübingen.
- Guy Collet, "General Veterans Affairs Overview in France", 보훈국제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Haller M. 1975. *Sicherheit durch Versicherung*, St. Gallen.
- Heinrich-J.Held, "General Veterans Affairs Overview in Germany", 보훈 국제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3.
- Krause P. 1982.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Landesbericht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In: Schriftenreiche für Interna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d. 7, Berlin.
- LeedeL. J. M.; Wijnberger B. 1982.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Landesbericht Niederlande*.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In: Schriftenreiche für Interna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d. 7, Berlin.
- Rogalla D. 1982.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Landesbericht Belgien*. Soziale Sicherheit im öffentlichen Dienst In: Schriftenreiche für Interna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d. 7, Berlin.
- Ron Herbert, "General Veterans Affairs Overview in Canada", 보훈국제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Ronal d. Aument, "General Veterans Affairs Overview in U.S.A.", 보훈 국제세미나 논문집, 한국보훈학회, 2005.
- SUVA. 2007. *Wegleitung der SUVA durch die Unfallversicherung*, Lurern.
- Zöller D. 1980. *Ein Jahrhundert Sozialversicherung*, Sriftenreiche für Interna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rialrecht Bd 6, Berlin.

3. 인터넷 자료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검색일 2008년 9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검색일 2008년 9월.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검색일 2008년 9월.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검색일 2008년 9월. 참고문헌